



2015년 1월 7일

동료 여러분,

40년 전 미국 대법원은 미연방법률 제 6편 ‘1964년 민권법’ (Title VI)에 근거하여 공립학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영어 능력 (LEP)을 가진 학생들이 의미 있게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sup>1</sup> 같은 해, 의회는 공립학교 및 주(州)교육기관 (SEA)들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 (EEOA)을 제정했습니다.<sup>2</sup>

주교육기관 및 학군에서 제한적 영어능력의 학생(지금은 일반적으로 영어 학습자 (EL) 또는 영어 학습자 학생이라고 함)에 대한 책임 이행에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이제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국내 4개 공립학교 중 거의 3개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공립학교 학생들의 9%를 구성하고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sup>3</sup> 이 학생들 및 모든 학생들이 고급의 교육을 받고 그들의 학업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평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학생들의 모국어 교육을 보존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인식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많은 학교들과 지역사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 교육부 (ED) 민권담당국 (OCR)과 미 법무부 (DOJ) 민권국 두 부서는 모두 미연방법률 제 6편 민권법을 교육적 측면에서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평등교육기회법 집행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동봉된 지침에는 미 연방법률 제 6편 및 평등교육기회법이 “민권법”으로 언급되어 있음) 또한 교육부는 영어습득 언어강화

<sup>1</sup> *Lau 대. Nichols*, 414 U.S. 563 (1974); 42 U.S.C. § 2000d to d-7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및 출생국가 차별을 금지함).

<sup>2</sup> Pub. L. 번호 93-380, § 204(f), 88 Stat. 484, 515 (1974) (20 U.S.C. § 1703(f)로 성문화됨).

<sup>3</sup> 미 교육부, 교육 통계 국가 센터, NCES 2013-312,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2011-12 Schools and Staffing Survey* (미국 공립 및 사립 초등, 중등학교의 특징), at 9 (표 2) (8월. 2013); 미 교육부, 교육 통계 국가 센터, NCES 2014-083,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4 (2014 교육 상태)*, at 52 (지표 12) (May 2014).

학력신장법, 즉 1965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의 A부(部), 미연방법률 제 3편의 개정법률안 (ESEA) ( Title III)으로도 알려진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sup>4</sup> 미연방법률 제 3편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주 교육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연방 자금은 다시 학군들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이를 통하여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영어 학습 및 주(州) 교과 내용 및 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합니다.<sup>5</sup>

정부 부서들은 주교육기관, 학군 및 모든 공립학교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상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동봉된 공동 지침을 발부합니다.<sup>6</sup> 본 지침은 민권법에 근거하여 영어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주교육기관과 학군의 법률상 의무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sup>7</sup> 또한 본 지침은 미연방법률 제 6편 및 평등교육기회법에 근거하여 교육부 민권담당국(OCR) 및 법무부(DOJ) 조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준법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영어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주교육기관과 학군의 연방 의무 시행에 사용할 수 있는 처리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이러한 민권법 의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미연방법률 제 3편의 보조금 및 하위 기관으로 재배급된 보조금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침은 제한적 영어능력의 학부모와 보호자들의 지역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방법률에 관한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제한적 영어능력의 학부모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 이 통합 지침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up>4</sup> 20 U.S.C. §§ 6801-6871.

<sup>5</sup> 20 U.S.C. §§ 6821(a), 6825(a); see also 34 C.F.R. § 200.1(b), (c) (내용 기준과 성취 기준 사이의 구별).

<sup>6</sup> “program,” (“프로그램”) “programs,” (“프로그램들”) “programs and services,” (“프로그램들 및 서비스”) 그리고 “programs and activities” (“프로그램들 및 활동들”) 등등의 용어들은 구어체 측면으로 사용되며 1987 민권복원법 (CRRA)에서 정의한 “program” (“프로그램”) 혹은 “program or activity” (“프로그램 또는 활동”) 용어의 뜻을 원용할 의도가 아님. 1972 교육 개정 (Title IX)의 Title VI, Title IX, 및 1973 재활법 (Section 504)의 Section 504을 개정한 CRRA 아래, “program or activity” (“프로그램 또는 활동”) 용어와 “program,” (“프로그램”) 용어는 학군 맥락에서 학군의 모든 운영을 뜻함. 42 U.S.C. § 2000d-4a(2)(B); 20 U.S.C. § 1687(2)(B); 29 U.S.C. § 794(b)(2)(B).

<sup>7</sup> Title VI에 해당하듯이, 본 지침은 미 보건, 교육 및 복지부와 민권국, *Identif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Denial of Services on the Basis of National Origin* (May 25, 1970) (출생국가에 따른 차별 및 서비스 거부 파악), 35 Fed. Reg. 11,595 (July 18, 1970) (1970 OCR 지침)에 재판됨, (1980년도에 창립 당시 ED에 배정된 상당수의 주요 프로그램들과 기능들은 HEW에서 이전됨); OCR, *The Office for Civil Rights' Title VI Language Minority Compliance Procedures* (December 1985) (민권국 Title VI 언어 소수민족 준수 절차) (1985 OCR 지침); and OCR, *Policy Update on Schools' Obligations Toward National-Origin Minority Students with Limited-English Proficiency* (September 1991) (제한된 영어 능력의 국가적 근원의 소수 학생들에 대한 학교들의 의무 정책 업데이트) (1991 OCR 지침)을 포함한 이 분야의 이전 Title VI와 일관하며 Title VI 분명히 하고 있음. 이 지침 서류들은 다음 이메일 주소에서 볼 수 있음: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ellresources.html>. 본 지침은 이 서류들을 분명히 하며 1991년 이후의 법적 개발과 일관함. EEOA 아래 준수 여부 평가 시, DOJ는 EEOA 사건 법과 본 지침에 확인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며 이는 OCR의 이전 Title VI 지침에서 확인된 것들과 비슷함.

대법원의 라우(*Lau*)판결과 평등교육기회법 제정 40 주년, 그리고 미연방법률 제 6 편 제정 50 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러한 이정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s/

캐서린 E. 라몬

민권 차관보

미 교육부

/s/

베니타 굽타

민권 대리 차관보

미 법무부

## Notice of Language Assistance

**Notice of Language Assistance:** If you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English, you may, free of charge, request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for this Department information by calling 1-800-USA-LEARN (1-800-872-5327) (TTY: 1-800-877-8339), or email us at: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Aviso a personas con dominio limitado del idioma inglés:** Si usted tiene alguna dificultad en entender el idioma inglés, puede, sin costo alguno, solicitar asistencia lingüística con respecto a esta información llamando al 1-800-USA-LEARN (1-800-872-5327) (TTY: 1-800-877-8339), o envíe un mensaje de correo electrónico a: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給英語能力有限人士的通知:** 如果您不懂英語, 或者使用英語有困難, 您可以要求獲得向大眾提供的語言協助服務, 幫助您理解教育部資訊。這些語言協助服務均可免費提供。如果您需要有關口譯或筆譯服務的詳細資訊, 請致電 1-800-USA-LEARN (1-800-872-5327) (聽語障人士專線: 1-800-877-8339), 或電郵: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Thông báo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khả năng Anh ngữ hạn chế:** Nếu quý vị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hiểu Anh ngữ thì quý vị có thể yêu cầu các dịch vụ hỗ trợ ngôn ngữ cho các tin tức của Bộ dành cho công chúng. Các dịch vụ hỗ trợ ngôn ngữ này đều miễn phí. Nếu quý vị muốn biết thêm chi tiết về các dịch vụ phiên dịch hay thông dịch, xin vui lòng gọi số 1-800-USA-LEARN (1-800-872-5327) (TTY: 1-800-877-8339), hoặc email: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영어 미숙자를 위한 공고:**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교육부 정보 센터에 일반인 대상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전화번호 1-800-USA-LEARN (1-800-872-5327) 또는 청각 장애인용 전화번호 1-800-877-8339 또는 이메일주소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aunawa sa mga Taong Limitado ang Kaalaman sa English:** Kung nahihirapan kayong makaintindi ng English, maaari kayong humingi ng tulong ukol dito sa inpormasyon ng Kagawaran mula sa nagbibigay ng serbisyo na pagtulong kaugnay ng wika. Ang serbisyo na pagtulong kaugnay ng wika ay libre. Kung kailangan ninyo ng dagdag na inpormasyon tungkol sa mga serbisyo kaugnay ng pagpapaliwanag o pagsasalin, mangyari lamang tumawag sa 1-800-USA-LEARN (1-800-872-5327) (TTY: 1-800-877-8339), o mag-email sa: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 знанием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Если вы испытываете трудности в понимани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вы можете попросить, чтобы в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перевод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ую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водит до всеобщего сведения. Этот перевод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слугах

페이지 5-동료 편지: 영어 학습 학생 및 제한된 영어 능력의 학부모

устного и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звоните по телефону 1-800-USA-LEARN (1-800-872-5327) (служба для слабослышащих: 1-800-877-8339), или отправьте сообщение по адресу: [Ed.Language.Assistance@ed.gov](mailto:Ed.Language.Assistance@ed.gov).

동료 편지: 영어 학습 학생 및 제한된 영어 능력의 학부모

목차<sup>8</sup>

- I. 영어학습자(EL) 학생에 대한 주(州) 교육 기관 및 학군의 의무 .....7
- II. 일반적 민권 사안 .....10
  - A. 모든 잠재적 영어학습자(EL) 대상 학생의 파악 및 평가 .....12
  - B. 영어학습자(EL) 학생들에게 언어 지원 프로그램 제공 .....14
  - C. 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및 지원 .....17
  - D. 모든 교육과정 및 과외활동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기회 제공 .....21
    - 1. 주요 교육과정 .....21
    - 2. 특수 및 고급 과정과 프로그램들 .....24
  - E. 영어학습자(EL)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분리 차별 방지 .....26
  - F. EL 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 서비스 평가 및 특수 교육과 영어 서비스 제공 .....28
    - 1. 장애우 교육법 (IDEA).....29
    - 2. 재활법 제504조.....31
  - G. EL 프로그램 또는 특정 EL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EL 학생의 필요성 충족 ...34
  - H. 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EL 학생 모니터링 및 종료 .....37
  - I. 학군의 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40
  - J. 제한된 영어 능력 학부모들과 뜻 깊은 의사소통 보장 .....43
- 결론 .....45

---

<sup>8</sup> 부서들은 이 서류가 관리예산처의 기관의 모범적 지침 실행에 대한 최종 공보 72 Fed. Reg. 3432 (Jan. 25, 2007), 아래 “의미심장한 지침 서류”라고 결정함.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fedreg/2007/012507\\_good\\_guidance.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fedreg/2007/012507_good_guidance.pdf). 이 서류와 기타 정책 지침은 수령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의 일원들에게 민권법 아래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서들이 집행하는 규정들의 시행을 위해 발부됨. 부서들의 법적 권한은 바로 이 법들 및 규정들에 기반함. 본 지침은 준거법에 요건들을 추가하지는 않지만, 보호받는 단체들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부서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에 대한 정보와 사례들을 수령인들에게 제공함. 본 지침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할 경우, [OCR@ed.gov](mailto:OCR@ed.gov) 및 [education@usdoj.gov](mailto:education@usdoj.gov)로 이메일을 보내던가 혹은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도 됨: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a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 Civil Rights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PHB, Washington, D.C. 20530.

## I. 영어학습자(EL) 학생에 대한 주(州) 교육 기관 및 학군의 의무

주교육기관과 학군도 영어학습자 프로그램과 활동이 민권법 및 해당 보조금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sup>9</sup> 미연방법률 제 6 편은 주교육기관과 학군을 포함한 연방 재정 보조 수령인들이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출생지)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10</sup> 미연방법률 제 6 편의 국적 차별 금지 조항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언어 장벽을 다룰 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sup>11</sup>

평등교육기회법은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학군 내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12</sup>

---

<sup>9</sup> 교육부 타이틀 VI 규정 참조: 34 C.F.R. § 100.4(b) (연방 재정 지원 유지를 위한 주(州) 혹은 주(州) 기관의 모든 신청서는 “ [타이틀 VI] 규정이 부과하였거나 이 규정에 준한 모든 조건들을 해당 프로그램 아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수령인들이 준수할 것이라는 합당한 보증을 주기 위한, 책임 있는 부서 관계자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이에 요구되는 운영 방식을 위한 조항을 제공 또는 동반해야 함”); *id.* § 80.40(a) (“수령자들은 해당 연방 조건 준수와 성과 목표들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및 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활동들을 모니터 해야 함”); *id.* §§ 76.500, 76.770 (SEA로 하여금 “해당 법령 및 규정 준수 보장에 필요한” 절차들-타이틀 VI의 비-차별 조항 포함-을 갖도록 요구함). 법무부 타이틀 VI 규정들 역시 참조: 28 C.F.R. § 42.105(a)(1) (“본 부 부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모든 연방 재정 지원 신청 및 시설 제공을 위한 모든 연방 재정 지원 신청서는... 프로그램 이행 또는 시설 운영이 본 부 부문에 명시된 또는 이에 대한 모든 조건들에 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 혹은 동반하여함.”); *id.* § 42.410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주(州) 기관은 기관 자체 또는 기관을 통해 연방 지원을 획득하는 수령들로 하여금 타이틀 VI 준수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해야 함. 연방 기관들은 이러한 주(州) 준수 프로그램들로 하여금 지정된 주(州) 인력에게 타이틀 VI 책임 업무를 제공하고 연방 기관들에 대한 본 부-부문에 설립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데 이는 주(州) 기관 및 부-수령인의 타이틀 VI 준수를 연방 관계자들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기록 관리를 포함함.”).

<sup>10</sup> SEA 또는 학군에 연방 자금을 제공하는 교육부 또는 법무부와 같은 모든 연방 기관은 타이틀 VI 준수 확인을 위한 검토 또는 이에 대한 위반 항의에 관한 조사 및 해당 규정 시행을 실시할 수 있음. 법무부 역시 연방 자금 기관의 위반 통보, 연방 자금 수령인이 타이틀 VI 비준수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이 사건을 법무부로 하여금 참조하게 할 경우 타이틀 VI 고소를 실시할 수 있음. 더욱이, 법무부는 전 연방 기관들을 상대로 타이틀 VI의 집행을 조정하며 타이틀 VI를 수반한 비공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sup>11</sup> *Lau*, 414 U.S. at 566-67 (영어 말하기 및 이해 불능이 출생국가-소수 민족의 자녀들로 하여금 학군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참여에서 배제한다는 1970 OCR 지침을 명시 및 단언하여, 타이틀 VI는 학군으로 하여금 언어 부족을 바로잡아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 학생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함); 34 C.F.R. §100.3(b)(1), (2).

<sup>12</sup> 20 U.S.C. § 1703(f) (“그 어떤 주(州)도 개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생국가를 이유로...그리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 기관의 실패로 인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거부할 수 없음”). EEOA 위반 총보 제공 후, 만약 SEA 또는 학군이 합리적인 기간안에 “적절한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는

특정 학교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민권법 준수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sup>13</sup> 정부 부서들은 30년 전의 카스타네다 대 픽커드(*Castañeda v. Pickard*) 판례로 인해 미국 제 5 회 순회 항소법원이 제정한 기준들을 적용합니다.<sup>14</sup> 구체적으로 각 부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기반을 이루는 교육 이론이 이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온전한 것으로 인정 받거나 또는 타당한 실험적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 (2) 학교 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실행방안이 학교가 채택한 교육 이론을 시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
- (3) 타당한 실험을 거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학생들의 언어 장벽이 실제로 극복되는 결과를 보여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여부.

정부 부서들은 또한 주교육기관의 민권법 준수 여부 평가 시 카스타네다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록 주교육기관이 교육 서비스를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주교육기관은 민권법에 근거하여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적절한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올바른 지침,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학교에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sup>15</sup> 예를 들어, 주교육기관이 자체 학교가 시행할 영어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모델 및 관련 실행방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요건 또는 지침을

---

민사 소송/조치를 제기할 수 있음. *Id.* §§ 1706, 1710. 또한 법무부는 비공개 EEOA 사건들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갖고 있음. *Id.* § 1709.

<sup>13</sup> 본 지침 전반에 걸쳐 “학교” 또는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SEA 또는 LEA (지역 교육 기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령인, 즉 공립 학교, 공립 차터 학교 및 공립 대체 학교를 포함한 모든 LEA를 포함함. 42 U.S.C. § 2000d-4a (20 U.S.C. §7801(26) 포함). 또한 “학교”과 SEA는 각각 EEOA에서 정의한 모든 LEA 또는 SEA를 포함함. 20 U.S.C. § 1720(a), (b) (20 U.S.C. §7801(26), (41) 포함). 어떤 경우에는 SEA와 LEA가 동일한 단체일 수도 있음. (하와이와 푸에토리코가 2개 예.)

<sup>14</sup> 648 F.2d 989 (5th Cir. 1981); 미국 대 텍사스 참조, 601 F.3d 354, 366 (5 회 순회법원 2010) (카스타네다 시험 재확인 및 적용); 1991 OCR 지침 참조 (“EEOA와 1970 OCR 각서 사이에 설립된 정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OCR은 1985년, LEP 학생들을 위한 수령인들의 프로그램들이 타이틀 VI 규정을 준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카스타네다 기준을 채택함.”).

<sup>15</sup> 한 예로, *Horne 대 Flores* 참조, 557 U.S. 433, 439 (2009) (“이번 사건의 논쟁은 아리조나 주(州)가 ELL 학생들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아님. 당연히 해야 함.”); 텍사스, 601 F.3d at 364-65 (EEOA를 SEA에 적용); 미국 대 옹커즈 시, 96 F.3d 600, 620 (2회 순회법원 1996) (“EEOA는 또한[LEA-지역 교육 기관]를 상대로 평등-교육-기회 의무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도록 함.”); *Gomez (고메즈) 대 일리노이 주(州) 교육 위원회*, 811 F.2d 1030, 1042-43 (7회 순회법원 1987) (SEA로 하여금 “주(州) 프로그램 시행을 설립하며 보장하는 정규 지침”을 정하도록 주장하며 “§ 1703(f)는 [SEA들]과 [LEA들이]. . .LEP 자녀들의 필요성이 보장되도록 주장함”); 아이다호 주(州) 이주자 위원회 대. 교육위원회, 647 F.2d 69, 71 (9회 순회법원 1981) (SEA가 “지역 군들로 하여금 EEOA “준수 보장을 감독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 또한 *supra* 참조, 9 주목 (모든 연방 자금 수령인들로서 부수령인들에 대한 SEA의 감독 의무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주교육기관이 수립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요건 또는 지침들 역시 카스타네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연방법률 제 3 편은 이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받는 주교육기관과 학군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을 둔 고급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 및 고급 언어 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 능력이 주(州) 기준에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16</sup> 영어학습자 학생을 등록시키는 모든 학군이 해당 주교육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미연방법률 제 3 편, A 부(部)에 근거하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군은 최소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기엔 너무 적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있거나 보조금을 받는 학군 컨소시엄의 일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편지에 설명된 미연방법률 제 3 편의 해당 수령인으로써의 학군들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요건들은 최소 보조금 요건이 없는 1965 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 제 1 장에서도 요구하는 의무사항입니다.<sup>18</sup>

미연방법률 제 3 편 A 부(部)에 근거한 자금은 동 자금이 없을 경우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연방, 주(州) 및 지역 공공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sup>19</sup> 민권법이 주교육기관과 학군으로 하여금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언어 장벽 극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므로 미연방법률 제 3 편 A 부(部)에 의거한 자금은 주교육기관 또는 학군의 민권법 의무 시행을 위해 선택된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주교육기관과 학군은 그러한 연방 민권법 의무 준수에 필요한 활동 그 이상의 활동에만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연방법률 제 6 편과 평등교육기회법에 근거한 주교육기관과 학군의 법률상 의무는 수령된 주(州) 또는 연방 자금 지원의 액수 또는 유형과는 별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주(州) 자금 지원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자녀가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받은 후에 주에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

---

<sup>16</sup> 20 U.S.C. §§ 6823(b)(2), 6825(c)(1),(2), 6826(d)(4). 현재 모든 SEA는 승인된 계획안이 있으므로 타이틀 III, 파트 A 아래 연방 자금을 수령하고 있음. *id.* §§ 6821, 6823 참조. SEA는 특정 주(州)-수준의 활동에 대해 5 퍼센트 이상의 자금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당한 이민 자녀들의 수 또는 비율 증가를 경험한 학군들을 위해 부보조금을 위한 15 퍼센트 이상의 자금을 보유할 수 없음. *id.* §§ 6821(b)(2), 6824(d)(1). 본 지침이 학군들을 위한 타이틀 III와 파트 A 부보조금이라 하는것은 각 지역의 EL 학생 인구에 따라 학군들에 제공되어야 할 연방 자금 (적어도 전체 80 퍼센트가 되어야 함)의 일부를 뜻하는것임. *id.* § 6824(a). 타이틀 III 보조금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2.ed.gov/programs/sfgp/index.html>에 있음.

<sup>17</sup> 20 U.S.C. §§ 6824(b), 6871.

<sup>18</sup> 이것은 학군들이 el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매년마다 평가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함, *id.* §§ 6311(b)(7) (타이틀 I), 6823(b)(3)(C) (타이틀 III); EL 학생들의 부모들을 위한 서면 통보 조항, *id.* §§ 6312(g)(1)-(3) (타이틀 I), 7012(a)-(d) (타이틀 III); 성 (이름)과 언어-소수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id.* §§ 6312(g)(5)(타이틀 I), 7012(f) (타이틀 III); 및 적절한 연례 진전에 관한 조항, *id.* §§ 6311(b)(2)(C)(v)(II)(dd), 6311(b)(3)(C)(ix)(III) (타이틀 I), 6842(a)(3)(A)(iii) (타이틀 III).

<sup>19</sup> 20 U.S.C. § 6825(g).

영어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주교육기관 또는 학군의 연방 민권법 의무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연방법률 제 3 편은 자체적으로 비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성(姓) 또는 소수 언어 사용자 신분에 따라 모든 연방 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입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0</sup> 아울러 미연방법률 제 3 편에 근거하여 자금을 받는 주교육기관과 학군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획득 및 주(州) 교과 내용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기준을 지원하는 학군의 프로그램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sup>21</sup> 주교육기관은 미연방법률 제 3 편의 보조금을 받는 학군들이 미연방법률 제 3 편의 요건 준수를 의무화 및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sup>22</sup>

## II. 일반적 민권 사안

교육부 민권담당국(OCR) 및 미법무부(DOJ)의 집행 노력을 통해 정부 부서들은 학군이 빈번하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분야와 주교육기관이 영어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연방법 의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분야를 파악했습니다. 본 편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정부 부서들이 아래 목적으로 주교육기관과 학군들의 공동 의무 준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 A. 언어 지원이 필요한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 및 평가
- B.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성공적으로 증명된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제공
- C.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고 지원
- D.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주요 교육과정, 졸업 요건, 특수 및 고급 과정과 프로그램, 스포츠, 그리고 클럽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 및 과외 활동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부여
- E.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불필요한 분리(차별) 방지

---

<sup>20</sup> *Id.* §§ 6312(g)(5) (타이틀 I), 7012(f) (타이틀 III).

<sup>21</sup> *Id.* § 6841(b)(2) (타이틀 III, 파트 A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군들로 하여금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 이를 SEA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LEA 프로그램과 활동들의 효과성 및 개선을 결정하기 위함).

<sup>22</sup> *Id.* §§ 6823(b)(3)(C) & (D), (b)(5), 6841(b)(3), 6842; 또한 *supra* 참조, 9 주목 (모든 연방 자금 수령인들로서 부수령인들에 대한 SEA의 감독 의무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F. 장애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장애우 교육법 (IDEA) 또는 재활법 제 504조에 근거한 특수 교육 및 장애 관련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서비스 전달 및 평가에 있어 학생들의 언어 필요성 고려
- G.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필요성 충족
- H.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및 학년 수준의 주요 내용 습득, 그 학생들이 영어에 능숙할 때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간 학생들이 시기 상조로 나간 것이 아닌지 모니터링하며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그 모든 학업 부족 사항이 해결 되었는지 등등 이러한 모든 과정과 관련하여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 I. 각 프로그램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습득하며 학생들이 타당한 기간 안에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고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제시<sup>23</sup>
- J. 제한적 영어능력의 학부모들과의 의미 있는 소통을 보장

본 지침은 또한 학군이 영어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민권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 지침에 설명된 연방법 의무의 준수 방법에는 한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 영어학습자 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설명한 일반적 민권 사안에 더하여 연방법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든 형태의 인종, 피부색, 출생지, 성별, 장애 및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기타 여러 요건들 중 주교육기관, 학군 및 학교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의 인지된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입학 시켜야 한다;<sup>24</sup>
- 인종, 피부색, 출생지 (영어 학습자 학생 신분 포함), 성별, 장애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대우 및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sup>25</sup>

<sup>23</sup> *Castañeda*, 648 F.2d at 1011; 참조: 인프라 설명. Part II.I, “학군의 EL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sup>24</sup> 학생 입학 실행과 관련된 해당 법적 기준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서들의 *Dear Colleague Letter: School Enrollment Procedures* (5월 8, 2014) (*동료 편지: 학교 입학 절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405.pdf](http://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405.pdf)에서 볼 수 있음.

<sup>25</sup> 연방 민권법 아래 차별적 괴롭힘을 다루는 의무에 대한 추가 정보는 OCR의 *More information about the legal obligations to address discriminatory harassment under the Federal civil rights laws is available in OCR's Dear Colleague Letter: Harassment and Bullying* (10월 26, 2010), (*동료 편지: 괴롭힘과 집단괴롭힘*), [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010.pdf](http://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010.pdf)에서 볼 수 있음. 법무부는 1964 이 법 집행을

- 교육적 정당성 없이 학교에서 소수 민족 학생들이 그들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sup>26</sup>
- 민권법 관련 우려사항을 학교에 알리거나 학교, 교육부 민권담당국(OCR) 또는 법무부 조사 혹은 법적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 위협, 협박, 강압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차별이 금지된다.<sup>27</sup>

비록 이런 사안들이 본 지침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정부 부서들은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영어학습자 학생 및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런 사안들과 기타 비차별 요건들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 A. 모든 잠재적 영어학습자(EL) 대상 학생의 파악 및 평가

학군에서 영어학습자 학생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학생들의 제한된 영어 능력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대한 “적극적 조치” 및 “적절한 조치”는 우선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입니다.<sup>28</sup> 학군은 학년 시작 후 30 일 안에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의 부모들에게 그 학생의 신원 및 언어 수업 교육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sup>29</sup> 학군은 학부모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서를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번역해야 합니다.<sup>30</sup> 서면 번역이 어려울 경우, 학군들은 제한적 영어능력의 부모들에게 서면 정보에 대한 무료 구두 해석을 제공해야 합니다.<sup>31</sup>

---

위해 OCR과 집행 권한을 공유하고 있으며 1964 민권법의 타이틀 IV 아래, 종교에 따른 괴롭힘도 다룰 수 있음.

<sup>26</sup> 한 예로, *Rubio (루비오) 대 터너 유니파이드 참조 Sch. Dist. No. 402*, 453 F. Supp. 2d 1295 (D. Kan. 2006) (타이틀 VI의 주장은 학교의 스페니쉬로 말하기 금지에 의해 언급됨). 다른 많은 학생들처럼 EL 학생들은 학습 시간이 아니거나 교내식당 또는 복도 등에서 자신의 주요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가장 편하게 느낄 것임.

<sup>27</sup> 연방 민권법 아래 보복 금지에 관한 법적 의무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교육부의 *Dear Colleague Letter: Retaliation* (4월 24, 2013) (*동료 편지: 보복*), [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304.html](http://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304.html)에서 볼 수 있음. 34 C.F.R. § 100.7(e) (타이틀 VI) 역시 참조; 34 C.F.R. § 106.71 (타이틀 IX) (34 C.F.R. §100.7(e)를 참고로 포함); 34 C.F.R. § 104.61 (섹션 504) (34 C.F.R. §100.7(e)를 참고로 포함); 28 C.F.R. § 42.107(e) (타이틀 VI); 28 C.F.R. § 54.605 (타이틀 IX) (28 C.F.R. § 42.107(e)를 참고로 포함); 28 C.F.R. § 35.134 (타이틀 II). 법무부는 보복 금지를 망라하기 위한 다수의 유사한 비-차별 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일관되게 보복 금지를 위해 EEOA를 해석함. 한 예로, *Gomez-Perez (고메즈-페레즈) 대 포터 참조*, 553 U.S. 474 (2008) (1967 고용법의 연령 차별의 연방-부문 조항 아래 보복에 대한 권리 인지); *CBOCS West (웨스트), Inc. 대 Humphries (험프리즈)*, 553 U.S. 442 (2008) (42 U.S.C. § 1981 아래, 보복에 대한 조치 권리 인지); *Jackson (잭슨) 대 Birmingham (버밍햄) 교육위원회*, 544 U.S. 167 (2005) (1972 교육 개정의 타이틀 IX 아래 보복에 대한 조치 권리 인지).

<sup>28</sup> 9-11 메모 문서 *supra* (타이틀 VI, 규정 및 지침, 그리고 *Lau 논의*)와 메모 12 (EEOA 논의) 참조.

<sup>29</sup> 20 U.S.C. §§ 6312(g)(1) (타이틀 I), 7012(a) (타이틀 III).

<sup>30</sup> *Id.* §§ 6312(g)(2) (타이틀 I), 7012(c) (타이틀 III).

<sup>31</sup> 67 Fed. Reg. 71,710, 71,750 (2002) 참조. 본 의무는 타이틀 VI와 LEP 부모들과 뜻깊은 소통을 보장하는 학군들의 EEOA 의무와 일관 됨. *논의 infra (인프라) Part II. J, “Ensuring Meaningful*

모든 영어학습자 대상 학생들을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감안하여 학군에서는 30 일 통보 기한 이전에 최대한 신속히 잠재적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영어학습자 대상자로 확인 및 파악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학군에서는 학생의 언어 배경 (예를 들어 처음 배운 언어, 학생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등록 시 가정 언어 조사 (HLS)를 사용합니다. 가정언어조사를 통해서 학생이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영어학습자 학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어 능력 (ELP) 평가시험을 볼 대상자를 식별합니다. 초기에 가정언어조사 또는 기타 영어 능력 시험으로 확인된 학생들을 '비영어 기초언어 또는 가정 언어 (PHLOTE)' 구사자학생이라고도 합니다.

학군에서는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 학생들을 정확히 적시에 파악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능력 평가서로 그들이 영어학습자 대상 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sup>32</sup> 영어능력 평가서는 영어의 4 가지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sup>33</sup> 정부 부서들은 듣기, 말하기, 예비-읽기(pre-reading) 및 예비-쓰기(pre-writing)를 평가하는 유치원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 학생들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서를 사용하는 일부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sup>34</sup>

---

Communication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t Parents” (“제한된 영어의 학부모들과의 뜻깊은 의사소통 보장하기”) 참조.

<sup>32</sup> 1991 OCR 지침 및 *Rios (리오스) 대 Read (리드) 역시 참조*, 480 F. Supp. 14, 23 (E.D.N.Y. 1978) (requiring “유능한 인력에 의해 실시된 객관적이며 입증된 시험” 요구); *Cintron (신트론) 대 Brentwood (브렌트우드)*, 455 F. Supp. 57, 64 (E.D.N.Y. 1978) (“입증된” 영어 능력 시험); *Keyes (키스) 대 Sch. Dist. No. 1*, 576 F. Supp. 1503, 1513-14, 1518 (D. Colo. 1983) (EEOA를 위반한 EL 학생들 파악을 위한 정식 입증된 시험 과정 부재).

<sup>33</sup> 1991 OCR 지침 참조; *Rios (리오스)*, 480 F. Supp. at 23-24 (듣기와 단어 실력 검사는 하되 “영어 읽기 또는 쓰기 실력은 검증하지 않는” 방법으로 EL 학생들을 파악하며 “유능한 직원이 객관적이고 입증된 시험을 실시하여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을 의무가 지역에게 있다”고 설명하는 등, 이러한 학군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여러 부분에서 타이틀 VI 와 EEOA 를 위반한것으로 결정됨.); *Keyes (키스)*, 576 F. Supp. at 1518-19 (“참여의 동등함[에 있어] 읽기와 쓰기 실력 역시 필수적”인만큼 “LEP 학생들의 구두 영어 실력 습득에 대한 초점은 우려의 또다른 원인”이라고 지적); 20 U.S.C. § 7801(25) 역시 참조 (ESEA 아래 미국 외에서 태어나거나 영어 비원어민 사용자들 및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LEP 로 분류), § 1401(18) (IDEA 도 똑같음);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2001 아동 낙오 방지법)*, 73 Fed. Reg. 61831 (10 월 17, 2008) (이하 “타이틀 III 2008 NOI”)에 의해 개정된 34 C.F.R. § 200.6(b)(3)(i) *Notice of Final Interpretations for Title III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ESEA) (1965 초등 및 중등 교육법의 타이틀 III 에 대한 최종 해석 통보)*.

<sup>34</sup> 본 서류의 목적상, “듣기” 및 “이해”는 교환가능한 용어들임. 흔히 의회는 “듣기”를 “인정된 4개 영역” 중 하나로 참고함.” 20 U.S.C. § 6823(b)(2) (타이틀 III); *id.* § 6841(d)(1) (타이틀 III) 역시 참조. 그러나 *id.* §§ 6826(d)(4) (타이틀 III) (“충분한 이해”), 7801(25) (“이해”) 참조. ED 역시 EL 학생들에 관한 다수의 최근 서류에서 이 영역을 “듣기”로 참조함. 한 예로, 타이틀 III의 2008 NOI, 73 Fed. Reg. 61828, 61829 n.5

- 예 1: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적절하고 신속한 배치를 위해 많은 학군에서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언어조사를 작성하게 하며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군에서는 학부모들이 수업 시작 전에 가정언어조사를 작성하게 한 다음, 수업이 시작한지 1주일 내에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시행하여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배치 및 변화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도 합니다.

정부 부서들이 영어학습자 학생 확인 및 평가 부문의 준수 문제를 파악한 몇 가지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주요 언어 또는 가정 언어를 초기에 파악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상당수의 잠재적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불충분한 가정언어조사 등과 같은 신원 확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3) 모든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는 경우; (4)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인 신입생들의 평가가 지연되어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5) 비영어 기초언어 구사자 학생들의 4 가지 언어 영역을 모두 평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들을 듣기와 말하기 영역만 평가하여 많은 수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놓치는 결과).

조사 과정 중에서 정부 부서가 고려해야 할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군에서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정확히, 적시에, 효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파악하는 절차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 ✓ 학군의 영어학습자 학생 파악 및 평가 방법을 주교육기관이 위임할 경우, 주(州)에서 수립한 제도가 여기에 기재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 **B. 영어학습자(EL) 학생들에게 언어 지원 프로그램 제공**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능력평가 시험에 기반하여 파악 되었을 때, 학군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들은 이론상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권법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해 그 어떤 특정 프로그램 또는 교육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sup>35</sup> 영어학습자

---

(10월 17, 2008); 34 C.F.R. § 200.6(b)(3)(i). 그에 반해 OCR는 문서상 “듣기”로 설명된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sup>35</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09-10. 카스타네다의 첫 쟁점 (법의 요소) 아래 교육적으로 온전하다고 사려되는 혼한 EL 프로그램들의 영어 학습으로는 다음을 포함: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자신이 영어에 능숙하게 되고 언어 지원 서비스 없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평등하게 영어 능력 및 표준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sup>36</sup>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 학년 수준, 교육 배경 그리고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배경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이전 교육이 출생 국가에서 방해받은 경우 (혼란, 전쟁, 질병, 기근 또는 교육 학습을 놓치게 된 기타 상황)에 특별한 필요성들을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했습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개개인의 필요성에 기반한 적절하고 타당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러한 서비스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교는 대부분의 경우 영어 능력이 우수한 영어학습자 학생들 보다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영어 개발 (ELD) 및 제 2 의언어 영어 (ESL) 서비스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적절한 영어능력평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ELD) (영어 부서)로도 알려진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영어를 제2언어로)는 EL 학생들에게 영어 (내용 지도 접근에 필요한 학습 단어를 포함)에 대해 명백하게 가르치도록 고안되고 4개 모든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의 영어 능력 개발을 위해 고안된 테크닉, 방법론 및 특별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임. 대부분의 경우, ESL 지도는 EL 학생들의 주요 언어(들)의 사용이 적은 영어로 진행됨.
  - Structured English Immersion (SEI) (구조화된 영어 몰입)은 EL 학생들이 영어에 능숙해진 후, 영어만 사용하는 주 교실로 잘 이행하고 성공할 수 있게 영어 실력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임. 교사들은 EL 학생들의 필요성 (예를 들어, ESL 지도 자격증 및/혹은 SEI 훈련)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화된 훈련을 받았으며 EL 학생들의 내용 접근 보장을 위한 ELD 및 SEI 전략 촉진에 강한 실력을 입증함.
  - 조기-퇴장 이중언어 교육이라고도 알려진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TBE)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은 학습에서 학생의 주요 언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은 영어 실력 소개, 유지 및 개발과 더불어 주요 언어 실력을 유지 및 개발함. TBE 프로그램은 EL 학생이 학습 주제 지도를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 언어로 배우는 동안, 학생의 전체-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 쌍방 또는 개발적으로도 알려진 Dual Language Program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서 그 목표는 학생들이 두가지 언어 능력을 개발하는것, 즉 한 지도는 영어로 받고 다른 언어는 대부분 주요-영어 구사자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기타 언어 구사자들로 구성된 교실에서 받음.

EL 학생 수가 작은 학교 또는 학교의 경우에도 EL 학생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함; 하지만 EL 프로그램이 덜 공식적일 수 있음. 상기 언급되지 않은 추가 EL 프로그램들 역시 민권 조건에 부합해야 함.

<sup>36</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1.

지정된 영어개발 및 제 2의 언어 영어(ESL)를 학생들에게 동등한 또는 비교 가능한 영어능력평가 수준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 예 2: 스페인어가 주요 언어이며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TBE) 프로그램에 있는 초급 단계의 영어학습자 학생은 주요 학습의 80%를 스페인어로 받고 하루에 2교시 제2의 언어 영어(ESL)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영어 능력이 중급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 학군에서는 스페인어로 받는 주요 학습 비율을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내용 수업 한 과목, ESL 수업 1교시, 그리고 비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반 수업을<sup>37</sup> 영어로 듣게 함으로써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sup>38</sup>
- 예 3: 초급 단계의 영어학습자 학생은 하루 영어개발 수업 2교시, 영어학습자 학생들만 듣는 사회 과목과 언어과목, 그리고 영어학습자와 비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함께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영어 능력이 중상급 단계로 향상함에 따라 학생은 부족한 영어 쓰기를 목표로 한 영어개발 수업을 매일 들으며 영어학습자와 비영어학습자 학생들과 내용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예 4: 한 학군이 여러 범위의 영어 능력 수준과 수 년간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경험을 가진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각기 다른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다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학군은 영어 능력 수준의 학생들과 장기간의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영어학습자 전용 영어개발 수업을 만듭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학년별 수준 영어 외에 듣는 이 영어개발 과정들은 고급 학습 단어 및 설명문 쓰기에 초점을 맞춘 언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영어개발 및 보호 테크닉에 관해 적절한 훈련과 자격 인증을 받은 교사들로부터 해당 학년 수준에 맞게 통합된 영어개발 지도 수업을 받습니다.

---

<sup>37</sup> 본 지침은 EL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된 학습 지도를 만들기 위한 학습적 시도인 Sheltered English Instruction (보호된 영어 지도)를 뜻하기 위해 “보호 내용 수업들”이란 용어를 사용함. 보호 학습적 시도는 EL 학생들의 학년-수준별 내용 분야 지식, 학습 실력과 발전된 영어 능력 개발을 지원함. 보호 내용 수업들에서 교사들은 EL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사회학)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학습적 전략을 사용하며 학생들의 영어 개발 (예를 들어, 새로운 주제를 학생의 이전 지식, 발판, 합동 학습 및 시각 교육 교재와 연결하기)을 촉진함.

<sup>38</sup> 본 지침은 “이전-EL” 학생들과 “never-EL” (“한번도 EL이 아니었던”) 학생들을 뜻하기 위해 “비-EL” 학생들이란 용어를 사용함. “이전 EL” 학생이란 EL로 확인되거나 EL 프로그램에 들어왔지만 EL 신분을 끝낼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한 학생들임. “한번도 EL이 아니었던” 학생들이란 한번도 EL로 확인되지 않거나 EL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임. 이 그룹은 입증되고 신뢰적인 평가에서 영어에 “능숙”하다고 판명된 PHLOTE 학생들, 즉 Initially Fluent English Proficient (IFEP) (초기에 영어에 능숙한) 학생들을 포함함. EL로 파악되었지만 학부모가 EL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지 않은 학생들은 “EL” 또는 “이전-EL” 둘중 하나이며 (EL 신분 종료에 필요한 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짐) “Never-EL”은 아님.

정부 부서들이 확인한 준법 문제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학군에서 (1) 수업시간표가 중복되는 유치원생 또는 영어학습자 학생을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하는 경우; (2)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훈련 받은 교사들이 아닌 보조교사만으로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정규 교육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 (3) 장애 학생 또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같은 특정 부분집합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더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했지만 아직 졸업 기준(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영어능력평가 포함) 에는 못 미치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더 이상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영어 학습에 있어 기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장기간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등록에도 불구하고 졸업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필요성을 다루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정부 부서들이 조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교에서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그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다루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군 프로그램들에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해 학군이 지원하는 각 언어 지원 프로그램이 본 문서에서 계속 설명하는 카스타네다 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
- ✓ 학군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제공 방법을 주교육기관이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시, 주 지정 요건들이 본 세부항목에서 설명한 기준들에 도달하는지 여부

### C. 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및 지원

학군에서는 그들이 선택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 포함된 것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 수준의 교사들, 이러한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훈련된 관리자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모든 학군에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지도할 적절한 수의 교사들이 있으며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학군 프로그램에서의 효과적인 지도에 필수적 실력을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sup>39</sup> 정식 자격요건이 지정된

---

<sup>39</sup> ESEA 타이틀 I 자금을 받는 SEA, 즉 현재 모든 SEA는 EL 학생 교사들을 비롯하여 주요 학습 과목의 교사들이 “highly qualified” (“뛰어나게 검증된/뛰어난 실력의”) 되었음을 보장해야 함. 20 U.S.C. § 6319(a). 뛰어나게 검증되었다는 뜻은 (1) 적어도 한개의 학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 완전한 주(州) 자격증 또는 면허 교부를 취득하고, (3) 주제에 대한 능력 입증임. *Id.* § 7801(23). 만약 SEA 또는 학군이 중등학교 수준의 (예를 들어, “ESL 수학” 또는 “ESL 과학”) 주요 학습 과목을 포함한 EL 학생들의 보호 지도 모델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보호 테크닉에 대해 적절히 훈련 받아야 하고 주(州) EL 교사 조건을 충족하며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기 위해 주교육기관이 요구하는 허가증 또는 증명서, 혹은 일반적으로 학군이 기타 과목의 교사들로 하여금 정식 요건들을 충족시키게 할 경우, 학군이 영어학습자 학생 지도에 필수인 정식 자격요건을 이미 갖고 있는 교사들을 고용하거나 이미 재직중인 교사들에게 정식 자격요건 취득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작업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정식 자격요건들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영어학습자 교사들이 그 학군이 선택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장할 만큼 주교육기관의 보증 또는 기타 필수 요건들이 철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스타네다 판례에서 주교육기관과 학군은 이중언어 교육 방식 제공을 위해 설계된 100 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700 단어로 된 스페인어 어휘력만 있으면 이중언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교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정된 훈련을 이수한 많은 교사들이 스페인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고 밝혀진 관계로, 법원은 주교육기관과 학군에 이중언어 교사를 위한 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격요건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식을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sup>40</sup>

카스타네다판결이 인정하듯이, 주교육기관은 자체 지침 및 모니터링 책임을 통해 각 학군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사들이 적절히 교육을 받은 교사들임 확실히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주(州)에서 요구하는 특정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에서 구체적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할 경우, 주교육기관과 자체 학군 모두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교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sup>41</sup>

영어학습자 교사 훈련을 실시하는 주교육기관과 학군은 그 교육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교사들을 적절히 준비시키는지 역시 평가해야 합니다.<sup>42</sup> 이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교사들이 수업 중에 교육받은 내용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또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모델이 자체 교육 목표들을

---

주요 학습 과제 (예를 들어, 수학 또는 과학)에도 뛰어나게 검증을 받아야 함. 만약 유일한 공식 기록의 영어 교사가 EL 교사라면 이 교사는 영어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함. 이에 더하여, 타이틀 III 아래 자금을 받는 학군들의 교사들은 영어 및 학습 지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타 언어에 능숙해야 하며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 실력도 갖춰야 함. *id.* § 6826(c) 참조;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3 (선택 EL 프로그램(들)에서 요구하는 언어 지원 학습의 유형을 실행하도록 훈련받고 검증된 교사들 요구).

<sup>40</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05, 1013.

<sup>41</sup> *Id.* at 1012-13 (“[주(州) 와 학군]이 [이중언어 교사들을 위해] 개선된 현장 훈련 프로그램과 이것을 완성하는 교사들의 자격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 절차”를 창안하도록 지방 법원에 지시”); 카스타네다 대 *픽커드*, 781 F.2d 456, 470-72 (5회 순회법원 1986) (주(州)와 지방의 변화 검토 및 적절히 훈련된 교사들 찾기); *supra* 메모 9,12,14 & 15 역시 참조.

<sup>42</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2-13.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전 적절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인력들을 평가하는 관리자들도 적절히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sup>43</sup>

- 예 5: 주(州) ESL 인증을 받은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ESL 지도에 필요한 실력이 없다는 항의를 주교육기관 받았습니다. 이러한 항의에 대응하여, 주교육기관은 주(州)에서 필요한 훈련 및 지원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ESL 인증을 받은 교사와그들을 평가하는 관리자들을 설문 조사합니다. 주교육기관은 파악된 필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교사 보충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교육생 교사들로 하여금 ESL 레슨 수행을 요구하고 관리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ESL 지도와 관련하여 교사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예 6: 학군에는 이중언어 수업의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주(州) 이중언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장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군에서는이중언어 수업 평가에영어만 사용하는 교장들과 동행할 학군 차원의 이중언어 자격증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 예 7: ESL 및 보호된 내용 학습을 포함한 체계적 영어 몰입(SEI)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군의 경우, ES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ESL 자격증 보유 교사들이나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내용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타당하게 훈련되고 검증된 내용 분야의 교사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학군은 보호 테크닉에 대한 현장 교육을 만들고, 모든 주요 내용 교사들이 2년 안에 성공적으로 훈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며 새로 고용된 교사들의 4분의 1이 고용일로부터 2년안에 ESL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교사들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학군에서는 충분한 자원과 경우에 따라 검증된 지원 인력을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적절한 영어 능력 수준 및 학년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영어 개발 교재,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이중언어 교재를 포함하여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충분한 학습 교재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 부서들이 학군의 교재가 자체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불충분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서들은 충분하고 적절한 교재들을 학군이 적시에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sup>43</sup> EL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사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뜻깊은 평가가 있어야 함. *카스타네다* 참조, 648 F.2d at 1013. 이는 교장과 같은 EL 프로그램 교사들의 학습 지도를 평가하는 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리오스 참조, 480 F. Supp. at 18, 23-24 (지역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이중언어 구사자가 아니며 이중언어 교사 평가에 필요한 관련 훈련이 부족한 관리자들을 사용한 조사 결과들에 의해 이 프로그램은 EEOA를 위반함).

특수교육보조원, 보조원 또는 과외 지도자들은 검증된 교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학군이 자체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검증된 교사들을 충분히 고용, 훈련하거나 확보하는 동안에 임시조치로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sup>44</sup> 그리고 학군이 검증된 교사들에 의해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사용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훈련을 받고 검증된 교사의 직접적 감시 아래에서만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sup>45</sup>

정부 부서가 확인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인력 및 자원 조달 준수의 문제점의 예를 들면 학군에서 (1) 학생의 필요성 보다는 인력 수준 및 교사 이용 가능성에 따라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ESL 지도를 위해 완전히 검증된 ESL 교사들 대신 일반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또는 과외 지도사들을 활용하는 경우; 혹은 (3)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주요 내용 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교육 교사들에게 불충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군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과 타당하고 적절한 교재를 포함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는지, 만약 둘 중 하나가 부족할 경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 ✓ 학군에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교사들이 필수 훈련 조건들을 달성했는지 정기적으로 또 충분히 평가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교사들 및 관리자들이 학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필요 시 보충 훈련을 제공하는지 여부
- ✓ 주교육기관이 지침을 통해 학군에서 검증된 교사를 통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주교육기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여부

---

<sup>44</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3 (이중언어 보좌관들은 이중언어 교사들을 대신할 수 없으며 지역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자격이 인증된 충분한 수의 이중언어 교사 확보에 대한 합심 노력을 하는동안 임시 방편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

<sup>45</sup> 20 U.S.C. § 6319(c)-(g).

## D. 모든 교육과정 및 과외활동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기회 제공

교육 프로그램에의 평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하려면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달성해야 하며 영어개발수업에서의 추가 시간으로 인해 기타 교육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해야 합니다.<sup>46</sup> 때문에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언어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그들의 영어 학습 기간에 초래된 학습 손실로 인해 손상된 교육과정 기타 부문의 평등한 참여에 대한 지원도 제공해야 합니다.<sup>47</sup> 이 두 가지 의무는 학군과 주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적절한 기간 안에 영어 능력 습득과 표준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평등성 등 두 가지를 달성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48</sup>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외에도,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는 그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교육과정, 정규과목 병행 또는 과외활동 포함)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뜻 깊게 참여하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sup>49</sup> 이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에는 유아원 프로그램, 특목 프로그램 (Magnet Program),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Advanced Placement (AP) 및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과정, 영재 프로그램, 온라인 및 원격 교육 기회, 공연 및 시각 예술, 운동, 그리고 클럽 및 우등생 단체 등과 같은 과외활동이 포함됩니다.

### 1. 주요 교육과정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교육 여정 동안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는 학군의 주요 교육과정 (예를 들어, 읽기/국어, 수학, 과학 및 사회학)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과학 및 기타 실험실 또는 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포함하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뜻 깊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뜻 깊은 접근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시기적절한 기간 안에 일반 교육 교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확실히 얻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의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시작부터 학년별로 적절한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하면서 뜻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학습에 적절한 언어 지원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학습 적응에 있어 학군들은 그들의 특수 지도 (예를 들어, 이중언어 또는 보호 내용 수업)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일반 교육 교실로 이행할 때 학습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축소된

<sup>46</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1.

<sup>47</sup> *Id.*; *supra* 메모 9, 12, 14, & 15도 참조.

<sup>48</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1; *supra* 메모 9, 12, 14, & 15도 참조.

<sup>49</sup> 34 C.F.R. § 100.1-2; 20 U.S.C. § 1703(f).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지도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시기적절한 기간 안에 학년별 기준에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적절한 나이의 학년 수준에 배치하여 각자의 학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up>50</sup>

- 예 8: 과도기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스페인어로 수학을 배운 영어학습자 학생은 일반 교육 교실의 비영어학습자 동급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학 교육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비슷하게,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해 보호 지도를 사용하는 과학 수업 역시 일반 교육 수업과 동일한 내용 및 실험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예전에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9학년 영어학습자 학생이 자신의 학년 수준의 수학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위해 집중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학생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은 해당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초등수준의 수학 교육과정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대안으로 기타 과목의 모든 임시 학습 손실이 적절한 기간 안에 만회 되었다면 학군들은 임시적으로 영어 습득을 기타 과목들보다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sup>51</sup> 만약 학군에서 임시적으로 영어 습득 강조를 선택할 경우,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학습 손실을 초래 여부, 즉 주요 과목들에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진도를 측정하고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더 주력하고 있을 당시 초래된 내용 분야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sup>52</sup>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주요 학업 분야를 따라잡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학군들은 학생이 영어 습득에 주력하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학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보상 및 보충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교육기관은 지침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군들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주(州) 지정 여부에 관계 없음)이

---

<sup>50</sup> 부서들은 저해된 정규 교육 (SIFE 학생들)-특히 고학년의-학생들이 그들 학군에 입학 할 시 일부 또는 전 과목 수준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일부 학군들은 이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적절히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 부서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나이에 적절하며, 학습 지도 내용이 주요 교육과정과 연관되고 졸업 또는 진급 조건을 위해 학점이 나오며 SIFE 학생들이 타당한 기간안에 학년-수준의 기준들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을 경우, 경감된 학습적 내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임. 하지만 지역이 고등학교 나이의 SIFE 학생들을 중등 또는 초등학교 캠퍼스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 한 일인데 이는 SIFE 학생들로 하여금 타당한 기간 안에 고등학교-수준의 기준과 졸업 조건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며 이런 배치 역시 나이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sup>51</sup> *카스타네다* 참조, 648 F.2d at 1011 (“[EL 학생들의] 학교 커리어 초반에 영어 읽기쓰기 개발을 주 목표로 한 교육과정은... 비록 프로그램의 결과가 이 기간 중 기타 분야에 대한 학습의 일시적 희생이더라도” “학생들의 정규 학습 프로그램에 평등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교육과정 참여 도중 초래된 학습 손실을 극복하는 처리 조치가 취해졌을 때” [허용됨]).

<sup>52</sup> *id.* at 1011-14 참조 (학군들이 다음 사항을 선택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즉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에 입학한 후, 학생들이 타당한 기간 안에 표준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동등함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고안하는 한” “[] 먼저 영어 실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그 후... 이 기간에 기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을 손실을 만회하는 보상적, 추가적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함”).

영어학습자 학생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간 안에 주요 교육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고안되고 또한 학생들의 영어 습득 주력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학습 손실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sup>53</sup>

합리적인 기간 안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타당하게 계획하려면, 초급 수준 영어 능력의 영어학습자 학생이 9 학년에 입학 시, 학군은 학생이 4 년 안에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sup>54</sup> 이에 더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비영어학습자가 동급생들처럼 대학 입학 요건을 달성하는데 있어 경쟁력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군에서 자체 학습 프로그램의 설계 내에 초급 수준의 영어 능력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대학 입학의 전제조건을 채우고 시기에 맞게 졸업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 및 표준 교육 프로그램의 평등한 참여를 달성하도록 하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학군에서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도록 검증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및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기간 동안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주요 교육과정의 진도를 측정해야만 학군은 학생들이 “만회할 수 없는 학습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sup>55</sup> 만약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그들의 주요 언어로 주요 내용 과목 지도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내용 분야에 대한 학교의 지식 평가서는 학생의 주요 언어로 된 시험을 포함해야 합니다.<sup>56</sup>

- 예 9: 학군은 체계적 영어 몰입 (SEI)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영어학습자 학생들 중 20 퍼센트가 학생들의 K-3학년 사회과학 과목 교육과정의 일부분만을 그들의 집중 ESL 수업에서 받고 있으며 나머지 80 퍼센트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

<sup>53</sup> *supra* 때모 9, 12, 14 & 15 참조; 20 U.S.C. § 6841 도 참조 (타이틀 III 는 LEA 에게 여러 사항들중 학년말에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는 자녀들의 숫자와 비율 평가를 SEA 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SEA 는 LEA 평가를 사용하여 LEA 프로그램과 활동의 효과성을 결정하고 개선함).

<sup>54</sup> *카스타네다* 참조, 648 F.2d at 1011 (지역들로 하여금 “[EL]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에 입학한 후, 타당한 기간 안에 표준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동등함을 얻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계산된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요구함.”).

<sup>55</sup> *Id.* at 1014.

<sup>56</sup> *Id.*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EL 학생들을 영어 성취 시험만 보게 한것은 부적절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있는 학생들의...발전은...영어를 구사하는 상대들의 발전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발전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의 원어로 된 표준화 시험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SEA는 EL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평가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 분야에서 알고 있는것과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확률이 제일 높은 언어로 된 평가를 포함함. 20 U.S.C. § 6311(b)(3)(C)(ix)(III). 또한 SEA는 영어 외에 필요한 언어와 제공이 불가능한 언어로된 학습 평가 개발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id.* § 6311(b)(6), SEA는 EL 학생들의 영어로된 읽기/국어 평가를 과도하게 연기할 수 없음, *id.* § 6311(b)(3)(C)(x).

해당 학년 수준의 과학 및 사회학 전체 교육과정을 수업 교실에서 비영어학습자학생들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 20 퍼센트가 나머지 80 퍼센트와 달리 3학년 사회학 및 과학 평가 또는 연례 영어능력 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자료를 감안하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20 퍼센트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4학년을 시작할 때 과학과 사회학에 관한 집중적인 보충 교습을 학교 시간에 제공합니다. 이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 학생들의 지정된 ESL 수업에서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 초점을 맞춘 ESL 연습들을 학년 수준에 맞는 과학 및 사회학 교과서들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학군은 K-3학년에 있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중급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면 2교시 ESL에서 이행하여 일부 과학 및 사회학 과목을 비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함께하는 과학 및 사회학 전체 교육과정 수업들에 포함시키도록 자체 체계적 영어 몰입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영어 능력을 습득하고 평등하게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을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 고안하고 시행하였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성장과 졸업 요건들을 달성하도록 그들 학년별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을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특수 프로그램(교육과정, 정규 과목 병행, 또는 과외활동 포함)에 뜻 깊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제때에 졸업할 수 있는 경로를 학군의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또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대학 및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고-수준 프로그램 및 지도에 평등한 접근기회가 있는지 여부.

## 2. 특수 및 고급 과정과 프로그램들

학군에서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영재교육 (GATE)이나 AP(Advanced Placement), 우등상, 또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 등 기타 특수 프로그램으로부터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영재교육 프로그램 또는 고급 수업이 뜻 깊은 참여를 위해 일정한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학교들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제한된 영어 능력을 이유로 영재교육 또는 기타 특수 프로그램 평가 및 시험 절차에서 이

학생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sup>57</sup> 만약 학군이 특정 영재교육 또는 기타 고급 프로그램이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데 있어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 정부 부서들은 해당 학군이 선호하는 정당성에 상당한 교육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 정당성을 고려하며, 만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동등하게 효과적인 대안 정책이나 방안을 학교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sup>58</sup>

- 예 10: 영어학습자 학생이 수업에서 수학에는 고급 실력을 보이지만 영어 진단 시험에는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학생의 수학 교사가 학생에게 영재 수학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영재 수학 프로그램 입문을 위한 자신의 준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비-언어 평가서 또는 수학 시험만 있는 영어학습자 시험 편지와 같은 다른 시험 방식을 사용합니다.
- 예 11: 학교는 AP 미적분학 입문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학 평균 B+와 전체 성적 B 평균을 요구합니다. 학교는 관심을 보이는 일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그들의 제한된 영어 능력으로 인해 전체 성적 B 평균에 못 미치고 그러므로 AP Calculus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전체 B 평균 요건을 철폐하는데 이는 AP 미적분학 수업의 뜻 깊은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서들이 파악한 이 분야의 준수 문제들의 몇 가지 예를 들면, 학교가 (1) 영재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영어학습자 언어 습득 서비스 일정을 잡는 경우; (2)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수학, 과학 또는 기술 구성의 뜻 깊은 참여에 영어 능력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에서 배제하는 경우; (3) 영재교육 수학 프로그램의 영어에 임의적으로 높은 입문 기준을 사용하여 수학 조건은 충족하지만 높은 영어 조건 때문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 혹은 (4) 학생들의 영재 프로그램 교사 추천서를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수업 교사들을 제외한 교사들에게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정 영재 프로그램 참여에 영어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데 주교육기관 또는 학군의 영재 평가 및 시험 절차들이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제한된 영어 능력을 이유로 그들을 배제하는 지 여부

<sup>57</sup> 1991 OCR 지침, 34 C.F.R. § 100.3(b)(1), (2).

<sup>58</sup> *Id.*

- ✓ 비영어학습자 동급생들과 비교했을 때, 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우등상 및 AP 과정에 대한 영어학습자 학생(예전의영어학습자 학생 포함) 추천 및 참여 정도를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 모니터 하는지 여부

### E. 영어학습자(EL)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분리 차별 방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은 출생국가 또는 영어학습자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학생들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이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별도의 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정부 부서들은 학군들과 주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이 명시한 교육 목적 달성에 부합되게 최소의 분리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sup>59</sup> 비록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독립된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련 교육적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 부서들은 체육, 미술 및 음악과 같은 과목에 영어학습자와 비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거나 교실 수업 밖에서의 활동 시간 (예를 들어, 점심, 쉬는 시간, 강당모임 및 과외활동)에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프로그램 관련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교육기관 또는 학군의 불필요한 영어학습자 학생들 분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정부 부서들은 분리의 본질과 정도가 교육적으로 온전하고 효과적인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지 조사합니다. 아래 H 부분 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듯이,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교육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 그 이상 또는 이하 동안 존속시킬 수 없으며 각 영어학습자 학생의 영어 능력,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의 진도 및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명시된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보다 길게 또는 짧게 영어학습자 전용 수업에 학생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 예 12: 스페인어 과도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영어와 해당 학년 수준의 내용을 스페인어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나중에 영어 읽기 쓰기 능력 및 더 많은 영어 내용 수업으로 전환할 때 학습적으로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ESL 지도 및 내용 수업을 위해 초급 수준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분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고 수준의 영어 능력을 습득함에 따라 프로그램은 이 학생들을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영어학습자 전용 내용 수업에서 통합 영어 내용 수업 즉 주요 언어 또는 내용 접근에 필요한 기타 지원을 계속 병행하면서 전환해야 합니다.

<sup>59</sup> See 1991 OCR 지침; 카스타네다, 648 F.2d at 998 n.4 (“우리는 언어 치료 프로그램에서 야기되는 분리가 최대 가능한 수준까지 최소화되고 프로그램들이 하루 빨리 스페니쉬-구사자 학생을 영어 교실로 통합시키는것을 목표로 하기를 추정함.”).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에 어느 정도의 분리가 필요한지 평가하는데 있어 정부 부서들은 분리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모델 입문 및 퇴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비영어학습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 프로그램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들처럼 동일한 범위 및 수준의 과외활동과 추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학군에서 적어도 매년마다 자체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학생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을 평가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퇴장 기준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퇴장 자격을 결정하는지 등등을 고려합니다.

일부 학군들은 신입생 프로그램을 일반 교육 수업을 향한 연결 다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군 또는 학교들은 불필요한 분리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서들이 자립식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이 포함된 자발적 신입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제한된 기간 동안 (대부분 1년) 제공하는 학군의 영어학습자 학생 분리에 대해 위반으로 여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군에서 신입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비학습 과목, 점심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비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로 만들고, 신입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통합 애프터-스쿨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학년 동안 학생들의 신입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의 적절히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 부서들이 과악한 분리 차별과 관련한 준수 문제들은 학군이: (1) 분리된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그들 학년-수준의 교육과정, 특수 교육 또는 과외활동에 관한 접근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2)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쉬는 시간, 체육, 미술 및 음악과 같은 비-학습 과목에서 분리시키는 경우; (3) 학군의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학생들을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 유지시키는 경우; 그리고 (4) 인지된 태도 문제 또는 인지된 특별 도움 때문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더욱 분리된 신입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 자체 선택한 교육적으로 온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최소 분리된 방식으로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지 여부*
- ✓ *학군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이 불필요하게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분리시키는지 평가하는 주교육기관의 모니터링 및 만약 불필요한 분리일 경우, 해당 비준수를 시정하는지 여부.*

## F. 영어학습자(EL) 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 서비스 평가 및 특수 교육과 영어 서비스 제공

장애우 교육법 (IDEA)과 1973 년 재활법 제 504 조(Section 504)는 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교육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sup>60</sup> 교육부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의 일부인 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국은 장애우 교육법을 감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민권담당국과 법무부는 Section 504 를 교육 측면에서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부는 연방 기관 전체에 걸쳐 Section 504 집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sup>61</sup>

주교육기관과 학군은 장애우 교육법(IDEA) 또는 재활법 제 504 조(Section 504)에 근거하여 장애가 있고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모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 역시 적절한 기간 안에 특수 교육 및 장애 관련 서비스에 필요한 위치 및 신원을 파악하여 평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실시 할 때, 학군은 사용할 적절한 평가서 및 기타 평가 자료 결정에 있어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제한된 영어 능력을 이유로 그들을 장애 학생으로 식별 또는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학군들은 연방법에 근거하여 자격이 주어진 언어 지원과 장애 관련 서비스<sup>62</sup>를 장애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군들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을 갖고 있는 영어학습자 학생의 학부모에게 언어 학습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통보해야 합니다.<sup>63</sup>

정부 부서는 일부 학군이 공식 또는 비공식 정책의 “이중 서비스 금지,” 즉,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서비스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 둘 중 하나만 받게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타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신분에 따라 구체적 기간 동안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장애 평가를 지연하는 정책을 갖고

---

<sup>60</sup> 20 U.S.C. §§ 1400-1419; 34 C.F.R. pt. 300 (IDEA, Part B 및 규정 시행); 29 U.S.C. § 794 및 34 C.F.R. pt. 104 (섹션 504 및 규정 시행).

<sup>61</sup> SEA 또는 학군에 연방 자금을 제공하는 교육부 혹은 법무부와 같은 모든 연방 기관은 섹션 504 준수 보장 또는 섹션 504와 규정 시행 위반에 대한 항의 조사에 대한 준수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법무부는 연방 자금 기관으로부터 위반 통보를 받은 후에 연방 자금 수령인이 섹션 504 또는 IDEA 준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사건을 법무부에 참조시킬 경우 섹션 504 또는 IDEA 소송을 개시할 수 있음. 나아가 법무부는 섹션 504 또는 IDEA와 관련된 비공개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음.

<sup>62</sup> “장애-관련 서비스”라는 용어는 IDEA 아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혹은 섹션 504 아래 자격을 갖춘 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규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보조 교재들을 망라하고자 함.

<sup>63</sup> 20 U.S.C. §§ 6312(g)(1)(A)(vii) (타이틀 I), 7012(a)(7) (타이틀 III). 부모가 LEP일 경우, 이 정보는 부모가 알아 듣는 언어로 되어야 함. 논의 *infra* (인프라) Part II. J, “Ensuring Meaningful Communication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t Parents” (“제한된 영어 능력의 학부모들과의 뜻깊은 의사소통 보장하기”) 참조.

있습니다.<sup>64</sup>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우 교육법(IDEA) 및 연방 민권법에 근거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 부서들은 주교육기관이 학군들의 연방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이러한 정책들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장애 영어학습자학생의 부모가 장애우 교육법(IDEA) 또는 재활법 제 504 조(Section 504) 아래 장애 관련 서비스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장애 학생은 본 지침에 설명된 모든 영어학습자 권리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sup>65</sup>

## 1. 장애우 교육법 (IDEA)

장애우 교육법은 특히 주교육기관과 학군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무료 적정 공교육 (FAPE)를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sup>66</sup>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무료 적정 공교육은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학부모 부담 없이 무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p>67</sup>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군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장애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장애 가능성이 있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학생의 위치와 신원을 파악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68</sup> 학부모 또는 학군은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자녀가

---

<sup>64</sup> *Mumid (뮤미드) 대 Abraham Lincoln High School (아브라함 링컨 고등학교)*, 618 F.3d 789 (8회 순회법원 2010), cert. 거부됨, 131 S. Ct. 1478 (2011)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정책이 타이틀 VI를 위반하는 의도적인 출생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공개 주장을 기각함. EEOA는 섹션 1703(f) 위반을 설립하는데 있어 의도적인 출생국가에 대한 차별 증거를 요구하지 않음, *카스타네다* 참조, 648 F.2d at 1004, and the court in *Mumid* (뮤미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정책이 EEOA는 위반할 지 모르나 기타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가치/장점에는 도달하지 못함. *Mumid (뮤미드)*, 618 F.3d at 795-96. 법원의 Title VI 판정은 조치 행동에 대한 사적 권리에 한정되었으며 연방 정부의 타이틀 VI 집행 또는 본 부문에서 논의된 기타 법령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음.

<sup>65</sup> 장애 EL 학생들과 Title III에 대한 추가 정보는 Department of Education's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Inclusion of English Learners with Disabilities i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s and Title III Annual Measurable Achievement Objectives (언어 능력 평가 및 타이틀 III 연례 측정 가능한 성취 목적에 장애 영어 학습자 포함에 관한 교육부의 질문 및 대답), <http://www2.ed.gov/policy/speced/guid/idea/memosdcitrs/q-and-a-on-elp-swd.pdf>에서 볼 수 있음. 기타 사안들 중, 본 지침은 연례 ELP 평가에서 EL 학생들을 포함 시키는 요건들과 필요 시 적절한 편의 또는 대체 평가 제공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sup>66</sup> 20 U.S.C. §§ 1412(a)(1), 1413(a)(1); 34 C.F.R. §§ 300.101-300.102, 300.201.

<sup>67</sup> 20 U.S.C. § 1401(9); 34 C.F.R. § 300.17.

<sup>68</sup> 20 U.S.C. §§ 1412(a)(3), 1413(a)(1); 34 C.F.R. §§ 300.111, 300.201. IDEA 아래, 장애를 가진 자녀란 지적 장애, 청각 손상/장애 (난청 포함), 음성 또는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실명 포함), 심각한 감정적 폐해 (IDEA에서는 감정적 폐해로 참고 됨), 정형 장애, 자폐증, 외상성의 뇌 손상, 기타 건강 장애, 구체적인 학습 장애, 농맹, 또는 다중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학생을 뜻하며, 앞서 언급된 이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함. 20 U.S.C. § 1401(3); 34 C.F.R. § 300.8. 섹션 504 아래 장애우 정의는 *infra* (인프라) 메모 76 참조.

장애우인지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sup>69</sup> 학군은 장애 자녀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 및 기타 감정 자료들이 “제공 또는 관리 감독이 확실히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모국어 또는 기타 소통 방법으로 진행되며 자녀가 인지하고 있고 또 학습적, 성장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공 및 관리 감독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sup>70</sup>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sup>71</sup> 학생이 장애 학생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결정 요인”이 제한된 영어 능력이며 학생이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자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sup>72</sup>

- 예 13: 교사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초급 수준 영어의 영어학습자 학생에게 학습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장애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학생이 평가 받기 전에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전에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1년을 이수하거나 중급 수준의 영어 능력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틀렸습니다. 교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학군에서 초기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는 시기적절하게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고 교사에게 설명합니다. 학부모 동의 이후에, 학군은 해당 영어학습자 학생의 영어능력 수준 및 언어 배경을 고려하여 이중언어 심리학자로 하여금 평가를 스페인어로 실시하도록 주선합니다.

영어학습자 학생이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한 장애 아동이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학군이 결정을 하고 나면, 학군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팀 (자녀의 부모들 및 학교 관계자들 포함) 미팅에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자녀에게 무료적정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sup>73</sup> 이 과정의 일환으로장애우 교육법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팀으로 하여금 기타 특정 요인들 중 제한된 영어 능력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지원을 자녀의 개별화된

<sup>69</sup> 34 C.F.R. §300.301(b). 학부모 동의를 얻고 나면 34 C.F.R. § 300.9이 정의한 대로, 평가는 학부모 동의를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실시되거나 주(州)에서 설정한 기간 안에서 SEA가 정한 평가 시간에 실시 됨. 34 C.F.R. §300.301(c)(1); 34 C.F.R. §§300.300-300.311 역시 참조.

<sup>70</sup> 34 C.F.R. § 300.304(c)(1)(ii); 20 U.S.C. §§ 1414(b)(3)(A)(ii). 본 서류의 목적상, 서류, 원어 및 주요 언어는 교환가능한 용어들임. IDEA 아래 EL 학생의 장애 결정에 있어 학군은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적성 및 성취 시험들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이 모든 정보가 기록되며 조심히 고려됨을 보장해야 함. 34 C.F.R. § 300.306(c)(1).

<sup>71</sup> Part II. G, “Meeting the Needs of EL Students Who Opt Out of EL Programs or Particular EL Services” (“EL 프로그램 또는 특정 EL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EL 학생들의 필요성 충족하기”)에 대한 논의 *infra* (인프라) 참조.

<sup>72</sup> 20 U.S.C. § 1414(b)(5); 34 C.F.R. § 300.306(b)(1)(iii)-(b)(2).

<sup>73</sup> 20 U.S.C. § 1414(b)(4); 34 C.F.R. §§ 300.306(c)(2) 및 300.323(c). IEP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 U.S.C. § 1414(d) 및 34 C.F.R. §§ 300.320-300.324 참조.

교육 프로그램 관련 지원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74</sup> 이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팀이 자녀의 언어 지원에 대한 필요 지식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애 영어학습자 자녀들이 그들의 언어 및 특수 교육 지원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팀 인원들에 제 2 언어 습득 및 학생의 제한된 영어 능력과 학생의 장애 구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훈련된 전문가, 가급적 전문 지식인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75</sup> 추가적으로, 장애우 교육법은 학군이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팀 미팅의 절차(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또는 영어 외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통역가 마련 포함)에 대한 학부모의 확실한 이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76</sup>

## 2. 재활법 제 504조

재활법 제 504 조는 연방 재정 지원 수령자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재활법 제 504 조는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애우 교육법 자격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재활법 제 504 조의 보다 폭넓은 장애 의미에 부합하는 장애 학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sup>77</sup>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재활법 제 504 조는 학군들로 하여금 해당 학군의 관할권에 있는 학생의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도와 상관 없이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무료적 정공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78</sup> 재활법 제 504 조에 근거하여 학생 개별의 필요성에

---

<sup>74</sup> 20 U.S.C. § 1414(d)(3)(B)(ii); 34 C.F.R. § 300.324(a)(2)(ii). IEP 팀은 IEP 검토 및 수정에서도 이 특별 요소를 고려해야 함. 34 C.F.R. § 300.324(b)(2).

<sup>75</sup> 부서들은 일부 주(州)들이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합동 EL 및 IEP 팀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sup>76</sup> 34 C.F.R. § 300.322(e); *id.* §§ 300.9, 300.503(c)(1)(ii), 300.612(a)(1) 역시 참조. 타이틀 VI와 EEOA 아래, LEP 부모가 IEP 혹은 섹션 504 계획 미팅에 의미있게 참여하기 위해선 IEP들, 섹션 504 계획들 또는 관련 서류들 역시 부모들의 주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름. 학군들의 LEP 부모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별도의 타이틀 VI 의무에 관한 추가 정보는, *infra* (인프라) Part II. J, “Ensuring Meaningful Communication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t Parents” (“제한된 영어 능력의 학부모들과의 뜻깊은 의사소통 보장하기”) 참조.

<sup>77</sup> 섹션 504 아래 장애우란 일상 생활 활동 한개 또는 그 이상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러한 장애 기록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사려되는 개인을 뜻함. 29 U.S.C. § 705(9)(B), (20)(B) (2008 장애 미국인법 개정법에 의해 개정된 대로); 34 C.F.R. § 104.3(j). 2008 개정법의 발효일 이후 더 넓어진 장애 정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OCR 2012 동료 편지 및 자주 묻는 질문 서류에 있으며 [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109.html](http://www.ed.gov/ocr/letters/colleague-201109.html) 과 [www.ed.gov/ocr/docs/dcl-504faq-201109.html](http://www.ed.gov/ocr/docs/dcl-504faq-201109.html)에서 볼 수 있음. 공립 초등, 중등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은 다음 경우 섹션 504 아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즉, 학생이 비 장애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간의 나이; 주(州) 법 아래 비 장애 학생들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이 의무적인 기간의 나이이거나; 또는 IDEA 아래 FAPE를 제공하는 주(州)의 사람일 경우임. 34 C.F.R. § 104.3(f)(2).

<sup>78</sup> 34 C.F.R. §§ 104.33-104.36. OCR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과 상관없이 주(州) 및 지방 정부 (공립 학군들 포함)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들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1990 장애 미국인 법의 타이틀 II 집행

따라 무료적정공교육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비장애 학생들의 필요성 충족 방식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개별적 교육 필요성을 적절히 충족하도록 고안된 정규 교육 및 관련 지원과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반영된 바와 같이 재활법 제 504 조와 장애우 교육법이 다른 요건들이 포함된 별도의 법령이지만, 재활법 제 504 조의 무료적정공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장애우 교육법에 준하여 개발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sup>79</sup>

장애우 교육법에 근거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영어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재활법 제 504 조 평가는 그 학생의 영어 능력의 결핍이 아닌 학생의 장애 여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재활법 제 504 조에 근거한 영어학습자 학생의 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서면 또는 구두 평가 감독 시, 학군에서는 오분류를 피하기 위해 해당 평가를 적절한 언어로 운영해야 합니다.<sup>80</sup>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sup>81</sup> 영어학습자 학생을 평가하기 전에, 학군들은 모든 언어에 기반한 과거 개입을 포함한 학생의 과거 교육 배경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해야 합니다.<sup>82</sup>

- 예 14: 부모가 학교의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거절한 영어학습자 학생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재활법 제 504 조에 근거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장애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학생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습니다. 비록 부모들이 학교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 불구하고 교장은 평가 과정 중에 학생의 언어 지원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며 이는 평가를 학생의 모국어로 실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이 제한된 영어 능력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평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합니다.

---

책임을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42 U.S.C. § 12132. 본 지침에서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군들에 의해 초래되는 섹션 504 위반은 타이틀 II 위반으로도 간주됨. 42 U.S.C. § 12201(a). 포함된 단체들 역시 타이틀 II 요건을 준수해야 함.

<sup>79</sup> 34 C.F.R. § 104.33(b)(2).

<sup>80</sup> Cf. 20 U.S.C. § 1414(b)(3)(A)(ii); 34 C.F.R. § 300.304(c)(1)(ii); 34 C.F.R. pt. 104, App. A 번호 25, § 104.35 (타이틀 VI는 학생의 주요 언어로 된 평가를 요구함) 논의 참조.

<sup>81</sup> 논의 *infra* (인프라) Part II. G, “Meeting the Needs of EL Students Who Opt Out of EL Programs or Particular EL Services” (“EL 프로그램 또는 특정 EL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EL 학생들의 필요성 충족 시키기”) 참조.

<sup>82</sup> 평가 실시와 배치 결정에 있어서 학군들은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정보를 이용해야 함 (예를 들어, 적성 및 성취 시험들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34 C.F.R. § 104.35(c) (학군은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정보를 이용해야 함”).

- **예 15:** 영어학습자 고등학생이 최근 전학했으며 학군에서 모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교사들과 상담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동의서를 얻은 후에, 학군은 학생이 재활법 제조에 근거한 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수 교육 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기로 결정합니다.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학군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생이 해당 학군에 오기 전에 다녔던 학교들과 그 학교들에서의 경험을 물어봅니다. 학군은 또한 과거 학교들로부터 기록을 받고 검토를 하는데, 즉 학생의 영어능력이 과거에 평가 되었으며 학생이 스페인어 모국어 사용자로 판단되었고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제공 받았지만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여부는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군은 이 학생에 대한 자체 장애 평가는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정부 부서가 과악한 바에 따르면 재활법 제504조 또는 장애우 교육법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관련한 준수 문제의 예를 들면 학군에서 (1) 장애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영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2) 영어학습자 학생의 모국어 또는 우세 언어가 영어가 아닌데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특수 교육 서비스를 영어로만 평가하는 경우; (3) 장애우 교육법 및 재활법 제504조에 근거한 배치 결정에 있어 영어학습자 교육 및 제2언어 지도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혹은 (4) 제한된 영어 능력 학부모들이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미팅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역가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SEA 또는 학군이 민권법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또 장애 영어학습자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들이 조사, 준수 검토 또는 활동 모니터링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 ✓ *영어학습자 학생의 장애 여부 결정에 사용된 평가가 학생의 필요성 및 언어 실력에 기반하여 적절한 언어로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특수 교육 및 영어학습자 서비스가 학생의 장애 및 언어 관련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의 장애 결정이 학생의 언어 실력이 아닌 능력에 대한 측정과 평가 기준에 기반하였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이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신속히 평가 받았는지, 또는 학생의 EL 신분 또는 영어 능력 때문에 허용 불가능한 지연이 있었는지 여부*
- ✓ *언어 지원 서비스 및 장애 관련 서비스 모두 자격이 주어진다고 평가된 영어학습자 학생에게 두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지 여부*

- ✓ 특수 교육 또는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화된 계획에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언어 관련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

### G. 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 또는 특정 영어학습자(EL)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필요성 충족

학군에서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해당 학교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특정 서비스를 거절 또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sup>83</sup>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녀를 ESL 수업에는 등록시키지만 영어학습자 전용 이중언어 내용 수업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내에 모든 또는 일부 서비스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수 교육 또는 기타 일정 관리 포함) 거절하는 것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들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특정 영어학습자 서비스의 거절은 자발적이며 인지된, 즉 알고 있는 거절이어야 합니다.<sup>84</sup> 그러므로 학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권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영어학습자 서비스의 범위 및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학부모들의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sup>85</sup>

조사에서 정부 부서들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특정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결정이 인지된 또는 자발적인 것 이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자녀를 제외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학군이 주장할 경우, 부서들은 학부모의 이러한 결정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학군의 기록 및 해당 서류의 부모 서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올바른 서류문서는 학군의 주장을 입증하고 부서들로 하여금 학군의 법적 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합니다.

정부 부서의 과거 조사에서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족들을 멀어지게 하거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에 특정 서비스 또는 자녀의 영어학습자 신분에 관한

---

<sup>83</sup> Cf. 34 C.F.R. § 100.3(b)(1),(2); 20 U.S.C. §§ 6312(g)(1)(A)(viii) (타이틀 I), 7012(a)(8) (타이틀 III) 역시 참조.

<sup>84</sup> 비록 EL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어도 법원들은 포기 (서류)가 통보되어야 하며/또는 인지되고 자발적이어야 하는 기타 분야들을 발견함. 한 예로, *Town of Newton (뉴턴 타운) 대 Rumery (루메리)*, 사건 참조 480 U.S. 386, 393 (1987) (법에 명시된 행동권에 대한 모든 포기는 “통보되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함”); *Alexander (알렉산더) 대 Gardner-Denver Co. (가드너-덴버 컴퍼니)* 415 U.S. 36, 52 n.15 (1974) (포기는 “자발적이고 인지된”것이어야 함).

<sup>85</sup> 이러한 권리에 대한 학부모 통보는 “실행 가능한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서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20 U.S.C. §§ 6312(g)(2) (타이틀 I), 7012(c) (타이틀 III). 즉, 인쇄된 정보의 번역이 실행 가능할 때마다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임; 그러나 번역이 불가능할 경우, SEA와 학군들은 학부모들이 서면 정보에 대한 통역을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함. 67 Fed. Reg. 71,710, 71,750 (2002) 참조. 이 의무는 Part II. J “Ensuring Meaningful Communication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t Parents” (“제한된 영어 능력의 학부모들과의 뜻깊은 의사소통 보장하기”)에서 논의된 LEP 부모들과의 뜻깊은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하는 학군의 타이틀 VI와 EEOA 의무들과 일관됨.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 직원 등 문제가 많은 학교의 관행으로 인해 학부모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내에 특정 서비스에서 자녀를 제외시킨 경우가 높음을 발견했습니다. 부서들은 또한 학교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자리가 부족하다거나 학교가 초급 영어 수준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가족들로 하여금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거절하도록 권장하는 비준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질에 관한 그들의 염려에 대해 해당 학교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거나, 제공되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인한 불신임, 또는 자녀가 영어학습자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특정 영어학습자 서비스에서 제외시킬 경우, 자녀들은 영어학습자 학생 신분을 보유하며 학교는 미연방법률 제 6 편 및 평등교육기회법에서 요구하는 “긍정적 조치”대로 이러한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서는 학교가 이렇게 제외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및 학습 지원을 민권법에 근거하여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sup>86</sup> 이렇게 제외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지원이 보장되기 위해서 학교는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특정 영어학습자 서비스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진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합니다.<sup>87</sup> 만약 학교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서 제외된 영어학습자 학생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영어 능력 또는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적절한 발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학교의 긍정적 조치는 영어학습자 학생의 부모들에게 학생의 부진에 대해 통보하고 해당 학생을 어느 시기에든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또는 적어도 특정 영어학습자 서비스에 등록하는 등의 추가 기회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 16: 영어학습자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학생은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능숙한 영어를 구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를 거부합니다. 첫 학기 이후, 영어학습자 학생의 교사는 학생의 능숙한 영어-말하기 실력에도 불구하고 읽기 및 쓰기 과제에서 학생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교사는 ELD 수업 한 개와 보호 내용 수업을 제안하며 두 수업이 어떻게 학생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지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ELD 서비스를 받기로 하며 학년말에 학생의 배치 재평가에 동의합니다.

<sup>86</sup> 또한 학교들은 학부모가 자녀를 IDEA 또는 섹션 504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더라도 학생에 대한 그들의 EL 의무를 유지함.

<sup>87</sup> 1991 OCR 지침 참조; 20 U.S.C. § 1703(f)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각 학생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SEA와 LEA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만약 영어학습자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힘들어 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음이 학군의 모니터링에서 나타날 경우, 학군은 학군의 민권법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일부 언어 습득 지원에 관한 학생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어학습자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들에게 적절한 제 2 언어 습득 및 ELD 훈련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 예 17: 학년 초에 유치원생이 시험을 보고 영어학습자로 결정됩니다. 학부모는 영어학습자 학생 전용의 분리 수업들에서 제공되는 미연방법 제3편 및 영어 서비스를 거절합니다. 비록 학생의 부모가 영어학습자 지정 서비스에서 자녀를 제외시켰어도 학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학교의 대응은 유치원생 교사를 상대로 영어학습자 학생의 정규, 통합 수업에서 ELD 전략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어학습자 비선택 학생들은 적어도 매년 그들의 영어 습득 진도를 측정하고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진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영어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평가 제외는 없습니다.<sup>88</sup> 영어학습자 비선택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신분 종료에 필요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학군은 종료된 기타 영어학습자 학생들(Part II. H. 부분 참고)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2년간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해야 합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군에서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학부모 또는 학생들을 장려하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든 또는 일부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거절할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여부
- ✓ 학부모가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거절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통보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올바른 서류를 학군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SEA와 학군이 영어학습자 서비스 비선택 비율이 높은 원인을 조사하는지, 근본적 원인을 다루는지,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학습 및 영어 능력의 필요성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

---

<sup>88</sup> ESEA 아래 LEP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학생들은, 20 U.S.C. § 7801(25) 참조, 주(州)-인가된 ELP 평가로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Id.* §§ 6311(b)(7) (타이틀 I), 6823(b)(3)(D) (타이틀 III), 6826(b)(3)(C) (타이틀 III).

## H. 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학생 모니터링 및 종료

학군은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달성과 내용 지식 성취에 관한 진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 있는 동안(영어학습자 수업 비선택 학생들의 경우 정규 교육 환경에 있는 동안)영어 습득에 적절한 진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내용 지식 습득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학군은 학습 내용 분야에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성과 (상기 Part II. D 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적절한 경우에 영어 외 언어로 된 시험들을 통한 측정 포함)를 최소한 유효하고 신뢰성 있게 매년 측정해야 합니다.<sup>89</sup> 또한 학군은 학년 중에 예상하는 학습 내용 지식 습득 성장을 위한 기준점을 포함하여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내용 지식 습득에 있어 주교육기관 역시 제 역할이 있는데, 바로 학군이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년 수준의 주요 내용 교육에 대한 뜻 깊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모든 내용 손실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sup>90</sup>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습득과 관련하여 주교육기관은 주(州) 내용 기준에 부합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4 가지 영역에서 과생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 및 평가 통보를 위해 영어 능력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sup>91</sup> 또한주교육기관은 학군이 이러한 영어 능력 기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주교육기관과 학군은 이 영역에서의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연례 영어 능력 평가를 확인하며 학생들의 진도를 매년 모니터 해야 합니다.<sup>92</sup> 미연방법률 제 3 편은 매년 영어 능력 평가를 유효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 평가는주교육기관의 영어 능력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sup>93</sup> 그러므로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습득을 모니터링할 때 학생들의 연간 영어 능력 평가 결과 및 영어 능력 기준 관련 기간의 진전 상황을 학생들의 학습 지도 부문에 통보해야 합니다.

- 예 18: 일부 학군은 ESL 및 내용 수업 교사들이 매 학기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학생들의 각 과목 성적, 지역 및 주(州) 평가와 표준화 시험, 그리고 4개 언어 영역과 각 학습 및 교과에서

<sup>89</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4 (“우리는 이 분야들에서 학생의 발전에 대한 입증된 검사는 언어 치료 프로그램의 적절성 측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에서 실시하는 LEP 학생들의 주요 언어로 진행된 과목에서의 발전 평가는 이 학생들의 주요 언어로 된 검사를 포함해야 함.).

<sup>90</sup> *Id.* at 1011; *Gomez (고메즈) 역시 참조*, 811 F.2d at 1042; *Idaho Migrant Council (아이다호 이주자 위원회)*, 647 F.2d at 71; *supra (수프라)* 메모 9, 14 & 15.

<sup>91</sup> 20 U.S.C. § 6823(b)(2).

<sup>92</sup> 20 U.S.C. §§ 6311(b)(7) (타이틀 I), 6823(b)(3)(C), (D) (타이틀 III).

<sup>93</sup> 20 U.S.C. §§ 6841(a)(3), 6842(a)(3).

영어학습자 학생의 장점 및 약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양식이 중급 영어학습자 학생이 사회학과 리포트 쓰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할 경우, ESL 교사는 사회학 교사에게 영어학습자 학생 지원을 위해 보호 전략과 쓰기 지시문을 제안합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 및 신분 종료에 대해서는 모든 K-12학년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습득하였음을 보장하는 4개 영역에 대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 능력 평가가 사용되어야 합니다.<sup>94</sup> 영어 능력 평가에서 숙달을 입증하기 위해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각 언어 영역의 별도 숙달 점수 (즉, 종합 점수) 또는 전체 4개 언어 영역에서 과생한 “숙달”의 종합 점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합 점수든 혹은 종합 “숙달” 점수든 간에 점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영어 능력 평가는 각 언어 영역에 대한 학생의 숙달을 의미 있게 측정하고 전반적으로 영어 숙달에 있어 학생의 발전을 유효하고 신뢰성 있게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 “숙달” 점수는 영어학습자 학생이 영어 능력을 습득하였다고 고려하기 위해 모든 필수 영역에서의 충분한 학생의 성과를 입증하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여야 합니다. 결합이든 종합이든, “숙달” 점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영어학습자 서비스 없이 해당 학년의 내용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각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를 정부 부서가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주교육기관은 영어 능력 평가에서 능숙한 점수를 받은 영어학습자 학생이 종료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추가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영어 능력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추가로 포함 시킬 수 있는데 이 추가 기준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 능력 평가의 숙달 결합 또는 종합 점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나간 후, 학군은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학업 발전 상태를 적어도 2년간 모니터 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시기상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학생들에게 초래된 학습 손실이 만회 되었으며, 학생들이 비영어학습자 동급생들과 유사하게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뜻 깊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sup>95</sup> 정규 교육 및 교정/치료 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어 프로그램에서 나간 영어학습자 학생의 학습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언어 장벽이 학군의 모니터링에 의해 지목될 경우,

---

<sup>94</sup> 2008 타이틀 III NOI at 61832-61833 (전체 4개 영역의 ELP 평가 요건 및 합성 또는 결합 점수 사용으로 어떻게 “능력”이 입증되는지) 참조; *supra* (수프라) 메모 31 및 32 역시 참조.

<sup>95</sup> 타이틀 III는 학군들로 하여금 EL을 마친 학생들이 내용 및 성취 기준에서 보인 발전을 2년간 모니터 하도록 요구함. 20 U.S.C. § 6841(a)(4). 이 학생들을 EL 신분에서 나가게 하는것은 타이틀 I 아래 “이전” EL 학생들에 대한 책임상의 취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주(州)들은 이전 EL 학생들의 주(州) 내용 평가 점수를 LEP 소집단에 2개의 책임 결정 주기까지 포함하도록 허용됨. 34 C.F.R. § 200.20(f)(2).

학군은 해당 민권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학생을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년별 영어 능력 시험으로 재검사하여 지속적인 언어 장벽 유무를 결정하고 필요 부분에 추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간 학생의 영어 능력 재검사가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재검사를 통해 해당 학생이 영어학습자로 결정될 경우, 학군은 학생을 영어학습자 신분으로 재등록 시키고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영어학습자 서비스에 재등록 할 경우, 학군은 재등록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예 19: 주(州) 도처에 있는 학군들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간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비영어학습자 동급생들과 필적하여 정규 교육 수업들에서 뜻 깊은 참여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계통적 코호트 연구 분석을 발견했습니다. 주(州)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종료 기준이 유효하며 신뢰적이고 4개 영역의 숙달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수정합니다. 그 후, 학군은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수정된 종료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합니다. 학군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정부 부서들이 파악한 영어학습자 학생 종류와 관련한 준수 문제는 학군이 (1) 불충분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시행 자격 교사들의 숫자에 기반하여 중-고급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종료 시키는 경우; (2) 학생들이 영어 능력, 특히 읽기와 쓰기의 특정 언어 영역에 능숙해지기 전에 시기상조로 학생들을 종료 시키는 경우; (3)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패하는 경우; 혹은 (4)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입증한 후에 (또는 평가 시 입증할 수 있었을 경우)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종료 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학군이 비선택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영어 능력 및 내용 지식 습득의 진전을 모니터 하는지 여부;
- ✓ 학군의 프로그램이 영어학습자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내용 지식, 그리고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지 주교육기관이 모니터링하는지 여부
- ✓ 학군이 영어학습자 신분을 정의하고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 및 평가에 대한 통보를 하는 객관적인 영어 능력 기준을 주교육기관이 개발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 ✓ 학군이 예상하는 성장의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 영어학습자 학생의 발전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하는지 여부

- ✓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어 능력 평가에서 영어 능력을 입증하기 전까지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학생들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 및 신분을 종료 시키지 않는지 여부
- ✓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 시기상조로 나간 것이 아니며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학습 손실이 만회되고 학생들이 비-EL 동급생들과 필적하여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에 뜻 깊게 참여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군이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적어도 2년 동안 모니터 하는지 여부

### I. 학군의영어학습자(EL)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군 또는 주교육기관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준법 여부 평가 시, 정부 부서들은 합당한 시행 이후 학생들의 언어 장벽의 실질적 극복을 나타내는 결과 측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고려합니다. 즉, 부서들은 현 영어학습자, 이전 영어학습자, 그리고 한번도 영어학습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의 성과 자료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이 실제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평등하게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타당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학군 또는주교육기관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안으로서 학군은 주기적으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합니다.<sup>96</sup> 만약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검증될 경우, 해당 교육 설계를 적용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은 교육적으로 건전한 학군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특정 목표가 불필요한 분리 없이 달성하는 측면에서 측정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목표는 영어학습자 학생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간 안에 (1) 영어 능력을 확보하고 (2) 비영어학습자 동급생들에 필적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뜻 깊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sup>97</sup> 정부 부서들은 프로그램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인 경우, 학군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계산된 적절한 계획 변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들은 지정된 수년 동안 학생들을 종료시키는 추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서들이 시계열 데이터를 검토하는 동안, 학군 또는주교육기관은 만약 영어학습자 학생이 아직 영어 능력 습득을 하지 못한 경우 학생을 영어학습자 신분 또는 서비스에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sup>96</sup> 카스타네다, 648 F.2d at 1014-15; 1991 OCR 지침; 20 U.S.C. § 6841(b)(2) (타이틀 III, 파트 A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군들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SEA에 제공하도록 요구함).

<sup>97</sup> EL 프로그램은 이중문화 목표 또는 주요 언어 읽기/쓰기 능력 유지와 같은 기타 목표를 가질 수 있음.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언어 장벽 극복에 성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 속한 영어학습자 학생, 프로그램에서 나간 영어학습자 학생, 그리고 한번도 영어학습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준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비교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고려해야 합니다.<sup>98</sup>

뜻 깊은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평가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하는 영어학습자 학생들,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 그리고 한번도 영어학습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의 주요 내용 분야 (즉, 이 분야의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 시험)에서의 성과, 졸업, 자퇴 및 유급 자료를 비교하는 시계열 데이터가 포함됩니다.<sup>99</sup>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프로그램의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프로그램에서 나간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성과는 한번도 영어학습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의 성과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현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한번도 영어학습자 대상이 아니었던 동급생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sup>100</sup> 학군의 데이터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프로그램 종료 기준에 도달하고 프로그램에서 나가고 있으며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영어학습자 서비스 없이 수업에 뜻 깊게 참여하고 있으며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번도 영어학습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과 동등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상급 학년에서 보다 어려운 학습 요건들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부서들은 이 데이터를 학생의 영어학습자 서비스 종료 시점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도 평가해야 합니다.<sup>101</sup>

- 예 20: 학군에서 4년, 5년 그리고 기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서비스를 마친 초급 수준의 영어학습자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는 계통적

<sup>98</sup> *카스타네다* 참조, 648 F.2d at 1011, 1014 (3번째 쟁점 (법의 요소) 아래 학생 성취 점수 논의); *Flores* (플로레스), 557 U.S. at 464 n.16 (“기록의 계통적 데이터 부재는 용이한 비교를 배제함.”); *텍사스*, 601 F.3d at 371 (고급 수업에서의 성취 점수, 자퇴율, 학년 보유율 및 참여율 그리고 3번째 쟁점 아래 계통적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Keyes* (키스) 대 *Denver* (덴버) *Sch. Dist. No. 1*, 576 F. Supp. 1503, 1519 (D. Colo. 1983) (히스패닉 학생들의 높은 자퇴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sup>99</sup> *Horne* (혼) 참조, 557 U.S. at 464 n. 16(기록의 계통적 데이터 부재는 용이한 비교를 배제함.”); *텍사스*, 601 F.3d at 371 (*카스타네다*의 3번째 쟁점을 논의하며 “계통적 데이터 분석 없이는 실시된 비교, 얻은 결론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함).

<sup>100</sup> *Horne* (혼) 참조, 557 U.S. at 467 (“기타 사항들 중, 항소법원은 ELL 학생들과 원어민 구사자들 간의 [Nogales] [노갈라스의] AIMS 시험 데이터에 기록된 지속적인 성취의 차이’를 참조하였으나, 이런식의 모든 비교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함. 좌우간, EEOA는 언어 장벽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 1703(f), 이는 영어로 운영된 시험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구사자들 사이의 결과 평등화 – 분명히 가치있는 목표이기는 하나 고연령의 EL 학생들의 경우 극도로 성취하기 힘든 것-는 아님.” (인용문 제외됨)).

<sup>101</sup> *id.* at 464 n.16 (“기록의 계통적 데이터 부재는 용이한 비교를 배제함.”) 참조.

코호트 연구 분석을 실시합니다. 학군은 또한 동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한번도 영어학습자가 아니었던 동급생들의 성과, 즉 3, 5, 8, 10학년에서 표준화 읽기, 수학, 과학, 사회학 시험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학년 유급, 자퇴 및 졸업율을 비교합니다. 학군은 동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서비스 조기 퇴장 (마침)과 내용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데이터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디자인, 교사 훈련 또는 학년에 걸친 프로그래밍의 차이점 덕분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학군은 어떠한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종료 평균 비율과 평균 표준화 시험 성과를 프로그램, 학교, 주요 분야,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에서의 년 수, 그리고 학년 별로 분해합니다.

- 예 21: 일부 학군은 영어학습자과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 데이터의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영어학습자가 아닌 학생의 데이터와 비례하여 수집, 분석할 목적으로 현존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은 표준화 시험, 학군 평가, 특수 교육 및 영재 프로그램 참여, AP 수업 등록, 졸업, 자퇴 및 학년 유급 등입니다. 예를 들어, 학군의 4년제 계통적 코호트 연구 분석 데이터가 영어학습자가 아닌 학생들보다 영어학습자 및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자퇴율을 발견했을 시, 학군은 자체 ESL 교사들의 도움으로 학년 6-12 ESL 교육과정을 시정하고 중등 보호된 내용 지도자들에 대해 더 많은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상기 II.D 및 H 부분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학군들은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진도를 매 학년마다 모니터하여 해당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이 처리 방안이 필요한 학습 내용 분야에서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지,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착실히 진행 중이며 영어학습자가 아닌 동급생들과 같이 대학 및 직업 준비가 된 비교할 만한 기회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성공의 기타 중요 지표로는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의 성취 격차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지, 또 현재와 이전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비영어학습자 동급생들과 비례하여 고급 수업, 특수 교육 서비스, 영재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에서 나타나는 정도 등이 있습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비영어학습자 동급생들과 비례하여 프로그램의 영어학습자 학생들과 프로그램에서 나간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시간이 흐른 후에 모니터 및 비교하는지 여부*
- ✓ *시간이 흘러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이 문서에 설명된 기준들에 미치지 못할 시, 시기적절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는지 여부.*

## J. 제한된 영어 능력 학부모들과 뜻 깊은 의사소통 보장

제한된 영어 능력의 학부모들이란 주요 언어가 영어가 아니며 언어 능력의 4 개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또는 쓰기) 중 한 영역에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 혹은 보호자들입니다. 학군과 주교육기관은 제한된 영어 능력의 부모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한된 영어 능력의 부모들이 주목하는 학군 또는 주교육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 정보를 적절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군 수준에서 이 중대한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의 예를 들면 언어 지원 프로그램,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미팅, 불만 사항 절차, 비차별 통보, 학생 규율 정책 및 절차, 등록 및 입학, 성적표, 학생의 학군 또는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한 학부모 허락, 학부모-교사 회의, 학부모 안내서, 영재 프로그램, 마그넷 및 차터 학교, 그리고 기타 모든 학교 및 프로그램 선택 옵션입니다.<sup>102</sup>

학군은 학부모들의 제한된 영어 능력 해당 여부 및 그들의 언어를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영어에 능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 또는 보호자들과 해당 학군에서 혼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을 파악하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군은 가정 언어 조사 등의 학생 등록 양식을 사용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영어 외의 언어로 구두 또는 서면 소통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초기 질의는 학교 및 주변 커뮤니티에서 혼한 언어로 번역되어 학부모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되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특정 학교에서 혼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의 경우, 학교는 해당 부모들의 언어로 학부모가 양식에 관한 구두 통역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이 그들의 언어 소통 지원 사항을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통역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는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 파악을 위해 타당하게 계획된 기타 절차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영어 능력 학부모들의 언어 지원 필요가 분명해질 때마다 해당 언어 지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언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그들 (학부모들)의 말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며 비록 자녀가 영어에 능숙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제한된 영어 능력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교육기관과 학군들은 적절하고 유능한 직원 또는 적절하고 유능한 외부 인력과 함께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에게 언어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sup>103</sup> 직원이

---

<sup>102</sup> 문서에서 설명한 민권법 아래 일반 조건들 외에 LEP 부모들은 Parts II.A, F.1, and G의 *supra* (수프라)에서 명시한대로 타이틀 I 및 III, 그리고 IDEA 아래, 특정 정보에 대한 번역 및 통역도 지원 받을 수 있음.

<sup>103</sup> 일부 학군들은 웹-기반의 자동 번역기를 문서 번역에 사용함. 이러한 서비스 활용은 번역된 문서가 기술적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고 또한 원본 서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경우에만 적절하다고 여겨짐. 부서들은 웹-기반의 자동 번역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경고함; 부정확한 번역은 LEP 부모들과 효과적으로

단순히 이중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과 커뮤니티 자원 봉사자들이 다른 언어로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완벽한 영어 통역 (예를 들어, 순차 또는 동시 통역) 또는 서류 번역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군들은 통역가와 번역가들이 논쟁 중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군은 통역가와 번역가들이 통역가, 그리고 번역가로서의 역할, 통역과 번역 윤리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며 비밀보장 유지의 필요성 역시 보장해야 합니다.

- 예 22: 학군이 가정 언어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언어 지원 필요성을 포착하고 해당 데이터를 학생 정보 시스템에 전산으로 저장합니다. 학군은 주요 언어들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의 언어를 분석하고, 중대한 학군 수준의 문서들을 해당 주요 언어들로 번역하며, 해당 주요 언어들 및 기타 언어들로 중대한 학교 수준의 문서를 번역하는데 있어 학교들을 지원하고, 번역된 문서들을 모든 학교들이 전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희귀한 언어의 경우, 학군은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학군 및 학교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할 자격을 갖춘 무료 통역가 제공에 대해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군은 자체 직원 인력의 언어 역량을 조사하고, 통역 또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 받았고 검증된 직원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언어에 대한 검증된 통역 및 번역 지원에 참가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학교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모든 학교들을 훈련시킵니다.

정부 부서들이 파악한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준수 문제들의 몇 가지 사례의 예를 들면 학군이 (1) 학부모들을 위한 번역 혹은 통역을 학생, 형제자매, 친구 또는 훈련 받지 않은 학교 직원에 의지 하는 경우; (2)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미팅, 학부모-교사 회의, 입학 또는 채용 박람회 또는 징계 절차 등에 번역 혹은 통역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학교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 정보에 대해 제한된 영어 능력

---

소통해야 하는 학군의 의무와 모순됨. 그러므로 필수 정보가 정확히 번역되고 원본 서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군이 자격 검증된 개인에게 기계 번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을 하도록 지시해야 함. 추가로, 서류가 충분한 제어 없이 웹-기반의 번역 서비스에 업로드 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될 경우, 서류의 비밀보장이 없어질 수 있음. 학생 교육 기록에 있는 개인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보를 담은 서류 번역을 위해 모든 웹-기반의 자동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는 학군들은 이러한 웹-기반 서비스에서의 정보 공개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가정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 법), 20 U.S.C. 1232g(b)**, 조건들과 **34 CFR Part 99.31**에 명시된 시행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함.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Protecting Student Privacy While Using Online Educational Services"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용 시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을 <http://ptac.ed.gov/sites/default/files/Student%20Privacy%20and%20Online%20Educational%20Services%20%28February%202014%29.pdf>에서 검토할 수 있음.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혹은 (4) 제한된 영어 능력 부모들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사할 때 정부 부서가 고려하는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제한된 영어 능력의 부모를 파악, 확인하는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제한된 영어 능력의 부모들의 언어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지 여부
- ✓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에게 언어 지원을 하는지 여부
- ✓ 제한된 영어 능력의 부모들이 모든 학군 또는 주교육기관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보와 의미 있는 접근을 갖고 있도록 SEA와 학군이 보장하는지 여부
- ✓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제한된 영어 능력의 부모들에게 무료의 검증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 결론

우리는 주교육기관과 학군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있어 주교육기관 및 학군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본 지침에 비추어 주교육기관과 학군이 영어학습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방안을 재평가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 혜택과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실히 제공하고 개선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결국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부서, 주교육기관 그리고 학군은 모든 영어학습자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고 그들이 우리 나라의 학교에 가져오는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의 교육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해당 주(州) 또는 지역에서 복무하는 교육부 민권담당국 (OCR)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1-800-421-348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자와 관련된 우리의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해당 부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ed.gov/ocr/ellresources.html](http://www.ed.gov/ocr/ellresources.html) 및 [www.justice.gov/crt/about/edu/documents/classlist.php#origin](http://www.justice.gov/crt/about/edu/documents/classlist.php#origin).